CONTENTS

# 2권 목차


6 토양환경보전법 1

7 폐기물관리법 73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49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351

10 화학물질관리법 451

06

# 토양환경보전법

# 목 차

## 6. 토양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제외)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 관리)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 고시)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손실보상)
제10조 삭제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제10조의7(분담금)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 · 운영 등)

###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3조(토양오염검사)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 · 시행)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제21조(행위제한)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3조 삭제

###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제23조의5(겸업 금지)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2(권리 · 의무의 승계)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 제4장 보칙

제24조(대집행)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26조(국고보조 등)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5(청문)
제27조(권한의 위임 · 위탁)

##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과태료)

#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br>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br>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 |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br>**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br>**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br>7. “토양정화업”이란 토양정화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br>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br>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br>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br>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br>5. 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br>6. 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br>7. 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br>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 |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br>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1. 28.><br>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br>[본조신설 2005. 6. 30.]<br>[제5조의3에서 이동 <2015. 3. 24.>]<br>**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 |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로 한다.<신설 2005. 6. 30.><br>②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6. 30., 2011. 9. 30.><br>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br>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br>3.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br>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 6. 30.><br>[전문개정 2001. 12. 19.]<br>[제목개정 2005. 6. 30.] | |
|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br>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br>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br>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br>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br>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br>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br>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br>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br>[본조신설 2015. 12. 1.] | |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br>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br>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br>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br>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br>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 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br>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7.><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1. 27.><br>[본조신설 2016. 4. 28.] |
|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5. 12. 1.] | | **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br>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br>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br>2. 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br>3. 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br>4. 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④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br>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 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7.><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1. 27.><br>[본조신설 2016. 4. 28.] |
|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관리)**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
|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br>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br>**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9. 6. 25.,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br>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br>1. 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br>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br>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br>가.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br>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br>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br>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br>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br>⑤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11. 4. 5.] | | 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br>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br>[전문개정 2001. 12. 31.]<br>**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br>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br>3.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br>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br>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br>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br>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br>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br>4.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br>5.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br>[본조신설 2011. 10. 6.] |
|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구역 등을 구체 | |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 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 12. 31.><br>1. 측정망 설치시기<br>2. 측정망 배치도<br>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br>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
|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br>1.「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br>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표토의 침식 정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1. 4. 5.] | |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br>1. 위치, 표고, 지형(경사도, 경사장)<br>2. 토지 이용 현황<br>3. 토성(土性), 용적밀도, 유기물함량, 토양 구조, 투수등급<br>4. 강우특성<br>5. 식생 및 작물재배 현황<br>6.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 관리현황<br>7. 토양 침식량<br>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1. 10. 6.] |
|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br>1.「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 |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br>**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 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인 경우<br>2.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br>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화책임자와 토양정화의 시기, 면적 및 비용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토양정화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br>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br>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br>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br>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정화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정화책임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br>[본조신설 2011. 4. 5.] | |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br>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br>2. 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br>[본조신설 2011. 10. 6.] |
|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시·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토지·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제2호 및 제4호에만 적용한다) 또는 사용할 수 있다.<br>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br>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br>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br>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br>②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계획에서 정하는 토양정화 기간 내에 할 수 있다.<br>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1. 28.><br>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br>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br>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br>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br>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9조(손실보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br>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br>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br>⑤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1. 4. 5.]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5. 12. 30.><br>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br>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br>3. 손실의 내용<br>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br>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 2005. 6. 30.><br>1. 협의기간 및 방법<br>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br>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br>2. 사업의 종류<br>3. 손실발생의 사실<br>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br>5. 협의의 경위<br>⑤ 삭제<2001. 12. 19.> | |
| **제10조** 삭제 | | |
|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그 주변지역,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6. 12. 27.><br>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br>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br>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br>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같은 항에 따라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그 부지 또는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14. 3. 24.><br>③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토양환경평가의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1. 토양환경평가 항목: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토양환경평가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br>2. 토양환경평가 절차: 기초조사와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br>3. 토양환경평가 방법: 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오염도 등의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부지의 이용현황,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br>[전문개정 2011. 4. 5.] | 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개정 2013. 5. 31.><br>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br>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br>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br>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1. 9. 30.]<br>[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 9. 30.>]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br>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br>[전문개정 2011. 4. 5.]<br>[제목개정 2014. 3. 24.] | | |
|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br>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br>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br>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br>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br>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br>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br>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br>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br>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br>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br>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br>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br>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br>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 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br>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br>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br>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br>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br>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br>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br>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br>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br>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1.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br>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br>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br>4.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br>⑥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화책임자가 아닌 자는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아 토양정화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br>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br>[전문개정 2014. 3. 24.]<br>[2014. 3. 24. 법률 제12522호에 의하여 2012. 8.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를 전문개정함.] | [본조신설 2015. 3. 24.]<br>[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8로 이동 <2015. 3. 24.>]<br>**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11. 20.><br>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0.><br>③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0.><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1. 20.><br>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1. 20.><br>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br>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br>[본조신설 2015. 3. 24.] | |
|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br>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br>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br>[본조신설 2011. 4. 5.] | | |
|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br>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br>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br>[본조신설 2011. 4. 5.] | | |
| **제10조의7(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10조의6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본조신설 2011. 4. 5.] | | |
|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4. 3. 24.] |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br>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br>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br>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br>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br>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br>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br>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br>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br>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br>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br>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br>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5. 3. 24.]<br>[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8로 이동 <2015. 3. 24.>] | |
|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br>1.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br>2.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br>3.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br>4. 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③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br>④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4. 3. 24.] | 이 정한다.<br>[본조신설 2015. 3. 24.]<br>**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br>1.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활용<br>2.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br>3.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및 국제협력<br>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활성화<br>[본조신설 2015. 3. 24.] | |
|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4.5> | | |
|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br>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경우<br>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br>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br>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br>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br>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br>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br>⑤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br>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신설 2014. 3. 24., 2017. 11. 28.><br>[전문개정 2011. 4. 5.] |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br>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br>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br>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br>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br>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br>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br>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br>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br>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br>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br>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5. 3. 24.]<br>[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8로 이동 <2015. 3. 24.>]<br>**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br>[본조신설 2005. 6. 30.]<br>[제5조의3에서 이동 <2015. 3. 24.>] | |
|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 |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법 |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1. 28., 2022. 12. 13.><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13.><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13.><br>④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4., 2017. 11. 28., 2022. 12. 13.><br>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2. 1. 25., 2018. 11. 20.><br>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br>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br>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br>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br>[전문개정 2001. 12. 19.]<br>[제목개정 2005. 6. 30.]<br><br>**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1. 9. 30.><br>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br>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br>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br>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br>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br>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br>[본조신설 2005. 6. 30.]<br><br>**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개정 2015. 3. 24.><br>②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5. 12. 30., 2008. 7. 30., 2011. 10. 6., 2014. 12. 24., 2018. 11. 27.><br>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br>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13.><br>[전문개정 2011. 4. 5.] |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br>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br>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br>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개정 2001. 12. 19., 2013. 5. 31.><br>[제목개정 2001. 12. 19., 2005. 6. 30.] | 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br>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br>3.「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br>[본조신설 2001. 12. 31.] |
|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7. 1. 17.><br>1.「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br>2.「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br>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br>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br>[본조신설 2015. 12. 1.] | | |
|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7. 11. 28.><br>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저장시설 중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br>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개정 2017. 11. 28.><br>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개정 2011. 9. 30.><br>1. 매년 1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br>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출검사를 받을 것<br>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6. 30.> |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br>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8. 11. 27.><br>[본조신설 2011. 10. 6.]<br>**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검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받은 시설 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7. 11. 28.><br>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⑥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br>[전문개정 2011. 4. 5.]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br>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br>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br>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받을 것<br>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br>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br>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br>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br>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 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br>**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br>**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br>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br>2.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br>[본조신설 2005. 6. 30.]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br>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09. 6. 16.]<br>**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br>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br>2.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br>3.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br>4의2.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토양오염검사로 한정한다)<br>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br>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②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0.><br>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개정 2018. 11. 20.><br>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2018. 11. 20.><br>[본조신설 2005. 6. 30.]<br>[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 |
|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br>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br>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br>3.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 **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8. 11. 20., 2021. 1. 5.><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누출된 경우<br>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br>[전문개정 2011. 4. 5.] | 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9. 30., 2018. 11. 20.><br>[전문개정 2009. 6. 16.] | |
|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2. 6. 1., 2014. 3. 24.><br>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 2014. 3. 24.><br>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 |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개정 2005. 6. 30., 2015. 3. 24., 2018. 11. 20., 2021. 1. 5.><br>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 |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4. 3. 24.><br>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br>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br>3. 오염토양의 정화<br>④ 삭제<2004. 12. 31.><br>⑤ 삭제<2004. 12. 31.><br>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4. 5.><br>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5.><br>[전문개정 2001. 3. 28.]<br>[제목개정 2011. 4. 5.] | 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8. 11. 20.><br>[본조신설 2001. 12. 19.] | |
|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24., 2017. 11. 28.><br>[전문개정 2011. 4. 5.] | |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br>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br>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br>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br>2.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br>가.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이 경우 토양정화검증보고서에는 정화방법의 적정성 검토 내용, 정화방법별 정화과정, 토양오염도 변화추이, 환경관리 사항, 토양정화일지, 오염토양의 반출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 내역, 정화토양의 재사용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br>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br>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br>[전문개정 2001. 12. 31.]<br>[제목개정 2005. 6. 30.] |
|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br>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br>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 |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신설 2005. 6. 30.><br>②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6. 30., 2011. 9. 30.><br>1.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흡수 등 생물학적 처리<br>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br>3.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br>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 6. 30.><br>[전문개정 2001. 12. 19.]<br>[제목개정 2005. 6. 30.]<br>**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br>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br>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br>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br>4. 영 제5조의8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br>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6. 1., 2017. 11. 28.><br>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7. 11. 28.><br>1.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br>⑥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운반·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인수인계서를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1., 2017. 11. 28.><br>⑦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2. 6. 1.><br>1.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br>2.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br>⑧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6. 1., 2017. 11. 28.><br>⑨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운반·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br>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br>2.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br>[본조신설 2005. 6. 30.]<br>[제목개정 2015. 3. 24.]<br>**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br>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br>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br>2. 대표자<br>3. 기술인력<br>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폐쇄·이 | 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br>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정화책임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br>6.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br>[전문개정 2005. 6. 30.]<br>**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br>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br>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2. 6. 1., 2017. 11. 28.><br>[전문개정 2011. 4. 5.] | 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br>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br>⑥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br>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br>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br>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4.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br>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br>[전문개정 2020. 7. 14.] |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30., 2011. 10. 6., 2018. 11. 27.><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br>④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신설 2008. 7. 30., 2011. 10. 6., 2013. 5. 31.><br>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br>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br>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5. 31., 2018. 11. 27.><br>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8. 11. 27.><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 5. 31., 2018. 11. 27.>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 [본조신설 2005. 6. 30.]<br>**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6. 25.,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br>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br>2.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서<br>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br>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br>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0. 6., 2015. 3. 24.><br>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br>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br>4.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의 변경<br>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 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br>[전문개정 2008. 7. 30.]<br>[제19조의3에서 이동 <2011. 10. 6.>] |
|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1.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br>2.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br>3.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15조의5(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도, 주변 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4. 3. 24.><br>②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정화책임자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br>1. 제6조의3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br>2.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br>3. 제19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br>4.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라고 대통령 |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br>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br>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br>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br>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4.><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4.> |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27.><br>1. 유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br>2. 중금속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br>2의2. 불소<br>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br>②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해성평가 대상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된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경우(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br>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3. 24.><br>④ 위해성평가의 항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위해성평가 결과의 검증 절차와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1. 4. 5.] |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11. 20.><br>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11. 20.><br>[본조신설 2011. 9. 30.]<br>[제목개정 2018. 11. 20.]<br>[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11. 9. 30.>] |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7.><br>1. 오염부지의 현황 및 오염이력에 관한 사항<br>2.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의 토지이용 계획<br>3. 시설물의 위치도 및 평면도<br>4. 토양정밀조사 결과<br>5. 그 밖에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7.><br>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8. 11. 27.><br>⑤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br>1.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중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오염물질<br>2. 현장조사 방법<br>3. 오염물질의 노출경로<br>4. 독성평가 자료<br>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 작성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br>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br>2.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결과<br>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br>⑦ 정화책임자는 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br>⑧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 11. 27.><br>1. 위해성평가서의 요약본<br>2. 위해성평가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br>3.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br>⑨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7.><br>[본조신설 2011. 10. 6.]<br>[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6으로 이동 <2011. 10. 6.>]<br>**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 11. 27.><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br>1. 위해성평가 실시 오염물질의 적정여부<br>2. 위해성평가 과정<br>3. 위해의 정도 및 정화시기, 정화범위, 정화수준의 적정여부<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8. 11. 27.><br>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의 검증 및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7.><br>1.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의 토양환경 담당자<br>2.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br>3.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br>4. 토양환경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br>5.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br>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5. 3. 24.><br>[본조신설 2011. 10. 6.]<br>[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7로 이동 <2011. 10. 6.>]<br>**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매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24., 2018. 11. 27.><br>②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1. 10. 6.] |
|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4. 3. 24.><br>② 정화책임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br>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정화책임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3. 24.> |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6. 25., 2011. 10. 6., 2013. 5. 31., 2015. 11. 30., 2018. 11. 27.><br>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br>2.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서<br>3. 정화사업계약서 사본<br>4. 정화검증계약서 사본<br>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0. 6., 2015. 3. 24.><br>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⑤ 토양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br>[전문개정 2011. 4. 5.] | | 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br>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br>4.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의 변경<br>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3. 5. 31., 2018. 11. 27.><br>[전문개정 2008. 7. 30.]<br>[제19조의3에서 이동 <2011. 10. 6.>]<br>**제19조의7(검증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와 같다.<개정 2008. 7. 30., 2013. 5. 31.><br>[본조신설 2005. 6. 30.]<br>[제19조의4에서 이동 <2011. 10. 6.>] |
|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거나 정화된 토양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토양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br>1. 조성목적, 필요성, 조성 및 운영 기간<br>2. 위치·면적 등 조성 대상 부지의 현황<br>3. 조성 대상 부지의 확보 방안<br>4. 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재원조달 방법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관리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에서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양관리단지의 토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br>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11. 4. 5.] | 5. 교통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br>6. 환경보전계획<br>7.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br>8. 정화된 토양의 재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br>[본조신설 2011. 9. 30.]<br>**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법 제15조의7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조성 대상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br>2.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br>[본조신설 2011. 9. 30.] | |
|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①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하며, 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정화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1.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및 정화기간<br>2.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및 정화방법<br>3.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정화에 관한 사항<br>② 토양오염정화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화방법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br>③ 토양오염정화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br>④ 제3항에 따른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및 방법 등은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정화자”로 본다.<br>[본조신설 2018. 6. 12.] | | |
|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br><개정 2011.4.5> | | |
|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중금속에 의한 오염토양중 토양오염도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1항 |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br>③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br>[전문개정 2011. 4. 5.] |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5. 6. 30.><br>1.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하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농경지<br>2.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9. 6. 16., 2011. 9. 30., 2018. 11. 20.><br>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br>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br>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br>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br>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br>[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01. 12. 31.>]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0.><br>[전문개정 2001. 12. 19.] | |
|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은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대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br>② 대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오염토양 개선사업<br>2. 토지 등의 이용 방안<br>3.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br>4.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br>5. 그 밖에 해당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br>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종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건강 피해조사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원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br><br>**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br>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br>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정화사업<br>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br>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br><br>**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br>2. 건강피해조사 기관<br>3. 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br>4.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br>[본조신설 2005. 6. 30.] |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br>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br>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br>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br>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3조로 이동 <2001. 12. 31.>]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대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br>② 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br>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7. 11. 28.><br>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br>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11. 9. 30., 2018. 11. 20.> |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이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br>**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5. 3. 24., 2018. 11. 27.><br>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br>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br>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6., 2018. 11. 27.><br>[전문개정 2008. 7. 30.]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br>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지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방법·기간·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0. 5. 25., 2013. 6. 4., 2017. 1. 17.><br>② 누구든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4. 5.><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시설의 |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br>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br>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나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2017. 11. 28.><br>[제목개정 2011. 4. 5.] | | |
|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책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br>1.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개선된 경우<br>2.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br>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 목적을 상실한 경우<br>② 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23조** | | |
|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br><신설 2001.3.28, 2004.12.31> | | |
|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6. 1., 2017. 11. 28.><br>1. 토양환경평가기관: 토양환경평가를 하는 기관<br>2.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br>3.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br>가. 토양정밀조사<br>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br>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br>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 |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11. 10. 6., 2015. 3. 24.><br>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br>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br>4. 누출검사기관: 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br>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2. 6. 1.><br>1.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 환경부장관<br>2.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누출검사기관: 시·도지사<br>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6. 1.><br>1. 지방환경관서<br>2. 국공립연구기관<br>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br>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br>5.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br>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br>⑤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1.><br>⑥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환경평가기 | 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 2005. 6. 30., 2015. 12. 30.><br>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br>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br>3. 손실의 내용<br>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br>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9., 2005. 6. 30.><br>1. 협의기간 및 방법<br>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br>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br>2. 사업의 종류<br>3. 손실발생의 사실<br>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br>5. 협의의 경위<br>⑤ 삭제<2001. 12. 19.><br>**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5. 31.><br>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31.><br>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br>2. 대표자의 변경 |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br>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br>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br>[전문개정 2001. 12. 31.]<br>**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br>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br>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br>3. 삭제<2006. 7. 4.><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7. 4., 2008. 7. 30., 2009. 6. 25., 2011. 10. 6.><br>③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2006. 7. 4., 2011. 10. 6., 2013. 5. 31.><br>[본조신설 2001. 12. 31.]<br>[제목개정 2005. 6. 30.]<br>[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01. 12. 31.>]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은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1.><br>[전문개정 2011. 4. 5.]<br>[제목개정 2012. 6. 1.] | 3. 기술인력의 변경<br>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6. 16.><br>[본조신설 2005. 6. 30.]<br>[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5. 6. 30.>]<br>**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국립환경과학원<br>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br>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br>4. 한국환경공단<br>5. 삭제<2009. 6. 16.><br>[본조신설 2001. 12. 19.]<br>[제17조의2에서 이동 <2005. 6. 30.>] |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5. 3. 24.><br>②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5. 3. 24.><br>[본조신설 2001. 12. 31.] |
|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br>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br>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br>3. 제23조의6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
|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 | |
|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br>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2.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br>3.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을 겸업한 경우<br>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6. 1.><br>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br>2.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br>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또는 평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br>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또는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br>6. 제23조의2제2항의 기술능력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검사 또는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br>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7. 11. 28.><br>1. 제15조의6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부실하게 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br>2.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br>3.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밀조사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br>4. 제13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br>5.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br>6.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1.><br>②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br>[전문개정 2011. 4. 5.] |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br>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부대시설안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br>2.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토양으로서 그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br>[본조신설 2005. 6. 30.]<br>[제목개정 2015. 3. 24.]<br>**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이하 "반입정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해야 한다.<br>③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br>④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br>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3.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br>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br>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상호 또는 사무실 소재지<br>2. 대표자<br>3. 기술인력<br>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내에서의 반입정화시설의 신설·폐쇄·이전에 따른 반입정화시설의 수 또는 위치<br>5. 반입정화시설의 면적(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⑤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br>⑥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줘야 한다.<br>1. 법 제23조의5에 따른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br>2. 법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br>3.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4.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br>5.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br>[전문개정 2020. 7. 14.] |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br>[전문개정 2020. 7. 14.]<br>**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br>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이하 "토양정화공사"라 한다)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1. 4. 5.] |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①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개정 2013. 5. 31.><br>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신설 2013. 5. 31.><br>1.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br>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br>[본조신설 2011. 9. 30.] |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
|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br>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br>2. 제23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3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br>3.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br>②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6. 1.><br>1.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지 아니한 경우 | |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2.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br>3.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br>4. 제15조의3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한 경우<br>5.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br>6.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br>7.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br>8.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br>9.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br>③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6. 1.><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①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착공한 토양정화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화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공사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로 본다.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②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토양정화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br>③ 토양정화공사를 토양정화업자에게 발주한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로부터 토양정화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양정화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23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23조의3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br>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br>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양도하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br>3. 법인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6. 12. 27.><br>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br>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3.「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br>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br>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 |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7., 2008. 7. 30., 2009. 6. 30., 2013. 5. 31., 2016. 12. 30.>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11. 4. 5.] | | 1. 신규교육 :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br>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br>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 또는 기술인력을 고용한 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11. 13.><br>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신설 2009. 6. 30., 2024. 11. 13.><br>[본조신설 2005. 6. 30.]<br>[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05. 6. 30.>] |
| **제4장 보칙** <개정 2011.4.5> | | |
|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br>1. 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br>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br>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br>4.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5.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br>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br>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br>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br>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전문개정 2011. 4. 5.] | |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br>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br>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br>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br>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br>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br>[제목개정 2009. 6. 25.]<br>[제28조에서 이동 <2001. 12. 31.>] |
|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 |
|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 2019. 11. 26.> | | **제34조(출입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1.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2. 제13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실시 및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4.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9. 11. 26.><br>1. 제23조의6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2. 제23조의10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 | | 는 그렇지 않다.<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br>[전문개정 2020. 7. 14.]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3. 24., 2019. 11. 26.><br>1.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3.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14. 3. 24.><br>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br>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br>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br>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11. 4. 5.] | |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2005. 6. 30.><br>② 삭제<2009. 6. 25.><br>[본조신설 2001. 12. 31.]<br>[제32조에서 이동 <2005. 6. 30.>] |
| **제26조의5(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br>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br>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br>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 6. 1.><br>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2. 6. 1., 2014. 3. 24.><br>[전문개정 2011. 4. 5.]<br>[제목개정 2012. 6. 1.]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1. 12. 19., 2002. 8. 8., 2005. 6. 30., 2011. 9. 30.,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0.><br>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br>2. 법 제5조제4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br>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br>4.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br>5. 법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br>5의2.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처리<br>5의3. 삭제<2013. 5. 31.><br>6.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에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br>7.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br>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br>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1. 9. 30., 2013. 5. 31., 2018. 11. 20.><br>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br>1의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br>1의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br>2. 법 제23조의6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br>3.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br>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br>5. 법 제26조의5제2호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br>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br>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31., 2015. 3. 24., 2018. 11. 20.><br>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br>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br>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表土)의 침식(浸蝕)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br>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br>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br>6. 법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 수립·변경, 의견청취, 협의<br>7.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토양관리단지 토지 일부의 사용·수익, 대부 또는 매각에 관련된 업무<br>[제목개정 2013. 5. 31.] | |
| **제5장 벌칙** <개정 2011.4.5> | | |
|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2.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3.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br>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7.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br>8.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br>[전문개정 2011. 4. 5.] | | |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br>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br>1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br>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br>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br>4.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5.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br>6.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7. 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br>8.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br>8의2.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한 자<br>9. 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br>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br>11.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자<br>1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br>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br>14. 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br>15. 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br>16. 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br>1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br>[전문개정 2004. 12. 31.] | | |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3. 24., 2017. 11. 28.><br>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br>2.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br>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6. 1., 2017. 11. 28.><br>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br>1의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br>2.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3.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br>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 토양환경보전법<br>[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일부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
|---|---|---|
| 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br>5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br>5의3.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br>5의4.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br>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br>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br>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br>9.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br>10.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br>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br>11의2.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br>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br>[전문개정 2010. 5. 25.] | | |

# 07 폐기물관리법

# 목 차

## 7. 폐기물관리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7조(국민의 책무)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6조(협약의 체결)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4조의2 삭제
제24조의3 삭제

### 제3장 삭제

###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제26조(결격 사유)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 신고 등의 의제)
제33조(권리 · 의무의 승계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34조(기술관리인)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8조(보고서 제출)
제39조(보고 · 검사 등)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조합의 사업)
제43조(분담금)
제44조(「민법」의 준용)

**제6장 보칙**

제45조(폐기물 인계 · 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8조의2(의견제출)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제48조의5(과징금)
제49조(대집행)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제56조(국고 보조 등)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제59조(수수료)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1조(청문)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양벌규정)
제68조(과태료)

#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제1장 총칙**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br>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br>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br>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br>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br>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br>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br>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br>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br>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br>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br>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br>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 |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1. 9. 27., 2012. 7. 3., 2018. 5. 17., 2019. 12. 20.><br>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br>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br>나.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br>다.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 전기 등의 형태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br>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br>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br>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br>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br>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br>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br>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br>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br>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br>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br>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br>**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br>**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br>**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br>**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br>나. 폐기물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br>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br>가. 폐타이어<br>나. 폐섬유<br>다. 폐목재<br>라. 폐합성수지<br>마. 폐합성고무<br>바. 분진[중유회,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분진만 해당한다]<br>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br>4. 삭제<2011. 9. 27.><br>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 9. 27.><br>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1. 15., 2011. 9. 27.><br>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br>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한국기계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br>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br>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br>[제목개정 2011. 9. 27.] |
|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br>②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4의2와 같다.<br>③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은 별표 4의3과 같다.<br>[본조신설 2016. 7. 21.] |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7., 2007. 12. 21., 2010. 7. 23., 2011. 7. 21., 2011. 7. 25., 2015. 1. 20., 2017. 1. 17., 2022. 4. 26.><br>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br>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br>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br>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br>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br>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br>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br>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br>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br>②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3.><br>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7. 20.> | | |
|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br>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br>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br>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br>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0. 7. 23.] | |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br>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br>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br>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 | |
|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br>1. 한국환경공단<br>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br>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br>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br>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br>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br>③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 |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br>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br>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br>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
|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 | |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2021. 1. 5.><br>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8. 3., 2013. 7. 16.><br>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3. 7. 16.> | | |
| **제9조** 삭제 | | |
| **제10조** 삭제 | | |
| **제11조** 삭제 | | |
| **제12조** 삭제 | | |
|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 |
|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5. 7. 20.><br>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7. 29., 2011. 9. 7., 2012. 9. 24., 2014. 1. 14., 2014. 12. 31., 2015. 7. 24., 2017. 10. 17.><br>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 |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br>**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 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br>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br>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br>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br>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br>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br>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br>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 | **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br>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br>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br>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br>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br>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br>12. 폐산·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br>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장치 등을 갖출 것<br>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br>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9. 7.><br>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9. 7.><br>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br>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④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 9. 7.> | |
|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br>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br>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br>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br><br>**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말한다.<br>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4. 30.><br>1.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br>가. 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br>나.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br>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개정 2020. 5. 26.><br>1. 폐석면<br>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br>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br>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br>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15. 7. 20.] | | 다. 영 별표 4의3 제2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폐기물<br>라.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br>2.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기물<br>가. 영 별표 4의3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나. 영 별표 4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폐기물<br>다. 영 별표 4의3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br>③ 법 제13조의2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란 영 별표 1 제8호 각 목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를 말한다.<br>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8. 3. 30.><br>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개정 2018. 3. 30.><br>[전문개정 2016. 7. 21.]<br>**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br>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br>③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br>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 |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br>1.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br>2. 재활용하려는 용도·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br>3.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br>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br>[본조신설 2016. 7. 19.] |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br>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br>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br>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br>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br>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 시설을 말한다) 현황<br>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br>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br>1.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br>2.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br>3. 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5. 7. 20.]<br>[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15. 7. 20.>] | |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br>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br>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br>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br>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br>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br>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br>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경우만 해당한다.<br>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br>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br>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br>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br>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br>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br>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6. 7. 21.]<br>[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13으로 이동 <2016. 7. 21.>]<br>**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br>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br>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br>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br>②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이란 별표 4의2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br>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6. 12. 30., 2020. 5. 27.><br>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br>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br>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br>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br>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br>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br>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br>[본조신설 2016. 7. 21.]<br>**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br>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br>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을 말한다)에게 발급해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0. 5. 27.><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br>[본조신설 2016. 7. 21.]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법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br>1.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조건<br>가. 승인의 유효기간(최대 5년까지로 한다)<br>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br>다. 재활용 대상 부지 및 면적<br>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br>마. 재활용 유형<br>바.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br>사.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및 기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br>아.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br>2. 매체접촉형 재활용 외의 재활용(이하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의 조건<br>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br>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전(前)처리 기준 및 방법<br>다. 재활용 유형<br>라. 재활용 공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br>마.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설치·운영<br>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에 따른 환경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br>[본조신설 2016. 7. 21.] |
|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br>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br>1. 국공립 연구기관<br>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br>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br>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③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br>1. 대상지역 현황<br>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평가<br>3. 환경위해성의 예방·제거 방안<br>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br>5.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④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br>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br>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 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br>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br>3.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br>[본조신설 2016. 7. 19.] | 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br>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br>가.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br>나.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br>다.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라.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br>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 시설을 말한다) 현황<br>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br>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br>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br>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br>3.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br>4.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br>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br>6.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⑧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br>[본조신설 2015. 7. 20.] | | 해당한다)<br>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br>가.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br>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br>②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br>2.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br>3.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④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br>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세부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유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br>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계획면적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br>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규모를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규모 이상만큼 증가(변경되는 누계를 포함한다)시키려는 경우<br>3. 재활용 유형을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 유형 중 같은 목에 해당하는 세부유형으로의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br>4. 사후관리 계획 중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주기·항목·방법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br>5.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br>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⑥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6. 7. 21.]<br>[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13으로 이동 <2016. 7. 21.>]<br>**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br>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br>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br>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br>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br>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br>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br>④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5의6과 같다.<br>[본조신설 2016. 7. 21.]<br>**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br>2.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br>3. 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방법·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할 것<br>② 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평가 및 기준 설정<br>2. 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저감 방안<br>3. 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br>4.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6. 7. 21.]<br>**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여야 한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br>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br>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br>2. 시험·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br>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br>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br>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본조신설 2016. 7. 21.] |
|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br>②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br>④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 | |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 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7. 21.><br>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1.><br>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1.><br>1. 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br>2. 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br>3. 조치명령의 내용<br>4. 조치명령의 사유<br>5. 조치기간·방법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br>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10. 7. 23.]<br>[제13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 | | 6.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br>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1. 9. 27.]<br>[제14조의4에서 이동 <2016. 7. 21.>] |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br>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br>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br>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신설 |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1. 폐기물처리업자<br>2. 삭제<2011. 9. 7.><br>3. 폐기물처리 신고자<br>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br>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br>6. 삭제<2011. 9. 7.><br>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4. 1. 17.><br>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br>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br>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4. 1. 17.><br>**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2013. 7. 16.><br>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br>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br>3. 폐기물처리 신고자<br>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br>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br>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6.><br>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br>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 |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br>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br>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 3. 3., 2016. 4. 28., 2018. 5. 17., 2022. 11. 29., 2024. 6. 28.><br>1.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br>2. 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3.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br>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br>6. 폐의류<br>7. 동·식물성 잔재물<br>8.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br>9.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br>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br>② 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br>③ 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br>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br>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br>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br>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br>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br>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br>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br>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 |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 무생산자<br>3. 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br>[본조신설 2014. 1. 17.]<br>[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4. 1. 17.>]<br>**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br>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br>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br>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br>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4. 1. 17.]<br>[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4. 1. 17.>]<br>**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 17., 2023. 12. 28.><br>1. 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이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br>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br>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br>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br>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 | |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br>2. 경비<br>3. 일반관리비<br>4. 이윤(특정 품목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br>5. 특정 품목의 물량, 운반·수집비용 및 매각단가와 영업구역 내 세대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특정 품목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br>6. 그 밖에 필요한 사항<br>②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1.><br>[본조신설 2011. 9. 27.]<br>[제15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br>**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br>**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br>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2월 31일까지<br>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2월 말일까지<br>②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br>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br>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br>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다음 연도 안전기준 이행계획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하게 한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br>1. 다음 연도 이행계획: 매년 11월 30일까지<br>2.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 31일까지<br>[본조신설 2019. 12. 31.]<br>[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1.>] |
|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br>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 |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4와 같다.<개정 2014. 1. 14., 2016. 7. 19.><br>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1. 14.><br>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개정 2019. 11. 26.><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3. 7. 16.]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4. 1. 14.><br>[본조신설 2011. 9. 7.]<br>**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br>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br>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br>3.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br>4.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br>[본조신설 2014. 1. 14.] | |
|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br>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br>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br>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br>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br>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br>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br>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br>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br>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3. 7. 16.] | |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br>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전문개정 2014. 1. 17.] |
|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br>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br>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br>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br>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br>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br>[본조신설 2017. 11. 28.] | |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br>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4. 30.><br>1. 폐농약<br>2. 폐의약품<br>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br>4.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br>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br>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br>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물 처리계획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추진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br>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br>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제2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8. 5. 28.]<br>[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8. 5. 28.>] |
|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br>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br>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9. 4. 16.] |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9. 10. 29.><br>1. 삭제<2017. 12. 26.><br>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br>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br>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업무<br>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29.><br>[본조신설 2011. 9. 7.] |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br>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br>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3. 12. 28.><br>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br>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br>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의 안전스위치<br>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청소차량이 내연기관이면서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塵芥) 차량이거나 재활용품 전용 저압축형 차량인 경우만 해당한다]<br>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br>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br>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br>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br>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br>[본조신설 2019. 12. 31.]<br>[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 <2019. 12. 31.>] |
|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br>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 |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br>**제16조의6(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br>1. 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br>2. 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br>3. 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br>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br>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br>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22. 12. 27.]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조정계획을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br>1.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처리비용(계약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리비용을 합산한 비용을 말한다)이 입찰일(종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br>2.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매각단가(계약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각단가를 합산한 단가를 말한다)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br>3. 최근 3개월 간의 특정 품목의 물량(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말한다)이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특정품목대행자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 경우<br>4. 최근 3개월 간의 영업 구역 내 세대 수가 입찰일이 속한 분기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br>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약금액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②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br>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br>④ 특정품목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의9서식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에 신청사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특정품목대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금액의 계산 방법, 조정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23. 12. 28.]<br>[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23. 12. 28.>]<br>**제16조의7(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지원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품목대행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그 수익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지급 주기를 반영하여 균분하고, 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같은 항 제10호에 따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른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그 지급 주기마다 특정 품목의 배출자(세대당 한명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익금의 액수, 산정 근거,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수익금 지원계획을 수익금을 지급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하여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br>② 제16조의6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수익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익금 지원계획에 그 변동내역과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br>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수익금 내역 및 지급·사용 계획 등을 공개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23. 12. 28.]<br>[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11로 이동 <2023. 12. 28.>]<br>**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6제5항에 따라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이나 계약금액 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특정품목대행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br>1. 계약금액·조정금액, 계약일·조정일, 계약기간, 영업구역 등 계약에 관한 정보<br>2.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면적 등 특정품목대행자에 관한 정보<br>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본조신설 2023. 12. 28.]<br>[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12로 이동 <2023. 12. 28.>]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제14조의7(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제6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 |
|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br>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br>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br>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br>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 | | **제16조의9(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이 조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8.><br>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br>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20. 11. 27.]<br>[제16조의5에서 이동 <2023. 12. 28.>]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11. 28., 2019. 11. 26.><br>[제목개정 2013. 7. 16.] | | |
|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br>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br>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br>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br>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br>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br>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br>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br>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br>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제16조의10(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br>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br>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신고<br>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br>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br>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br>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br>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1. 26., 2023. 8. 16.><br>[본조신설 2013. 7. 16.] | 를 개설한 자<br>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br>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br>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br>[본조신설 2014. 1. 14.] | 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7. 21., 2020. 11. 27., 2023. 12. 28.><br>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br>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br>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br>[본조신설 2014. 1. 17.]<br>[제16조의6에서 이동 <2023. 12. 28.>]<br><br>**제16조의12(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br>1.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br>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br>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br>2. 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br>3. 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br>가. 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br>나. 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다.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br>4. 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br>[본조신설 2020. 5. 27.]<br>[제16조의8에서 이동 <2023. 12. 28.>]<br>**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br>**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
|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br>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2023. 8. 16.> | |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br>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br>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br>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br>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 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 8. 3., 2013. 7. 16.><br>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 |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2. 11. 29.><br>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제18조제4항제2호·제5호(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br>2.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br>[본조신설 2016. 1. 21.]<br>[제16조의7에서 이동 <2020. 5. 27.>]<br><br>**제17조의3(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br>2. 삭제<2024. 8. 16.><br>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br>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br>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br>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7. 8. 3., 2015. 1. 20., 2017. 4. 18.><br>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br>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br>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br>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br>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br>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br>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7. 8. 3., 2012. 6. 1., 2015. 1. 20., 2017. 4. 18.><br>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br>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br>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 | |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br>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br>마. 폐유독물질<br>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br>사. 수은폐기물<br>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br>자.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5.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전문개정 2020. 5. 27.]<br>[제목개정 2024. 8. 16.]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br>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br>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br>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⑦ 삭제<2023. 8. 16.><br>⑧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07. 8. 3., 2017. 4. 18., 2019. 11. 26.><br>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신설 2007. 8. 3., 2010. 3. 31., 2010. 7. 23., 2016. 12. 27., 2017. 4. 18.><br>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1. 26.> | | [제17조에서 이동 <2024. 8. 16.>]<br>**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 6. 30., 2011. 9. 27., 2014. 1. 17., 2018. 1. 17., 2022. 11. 29.><br>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br>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br>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br>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br>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br>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개정 2008. 8. 4., 2014. 1.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br>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br>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br>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br>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08. 8. 4., 2014. 1. 17.><br>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8. 4.,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4. 4. 17., 2016. 1. 21., 2018. 5. 17., 2018. 5. 28., 2020. 5. 27., 2023. 12. 29., 2024. 6. 28.><br>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br>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br>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br>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br>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 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br>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br>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br>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br>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br>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5. 27.><br><br>**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개정 2010. 10. 18., 2011. 9. 27., 2013. 5. 31., 2015. 7. 29., 2017. 10. 19., 2020. 8. 31., 2021. 4. 30., 2022. 11. 29.><br>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br>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br>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br>3의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br>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br>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br>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br>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br>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9.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br>②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0. 19.><br>③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br>1. 주 원료명 및 사용량<br>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br>3. 제조공정<br>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0. 19.><br>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2017. 10. 19.><br>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2017. 10. 19.><br>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1. 15., 2011. 9. 27., 2014. 1. 17., 2017. 10. 19., 2018. 5. 17., 2020. 5. 27.><br>1. 삭제<2018. 5. 17.><br>2. 삭제<2018. 5. 17.><br>3. 삭제<2018. 5. 17.><br>4. 삭제<2018. 5. 17.><br>5. 삭제<2018. 5. 17.><br>⑧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16. 1. 21., 2017. 10. 19.><br>⑨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5. 27.><br>[본조신설 2008. 8. 4.]<br><br>**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br>법 제17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br>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br>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br>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br>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br>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br>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br>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br>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br>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 |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br>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br>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 수행계획서<br>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br>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br>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br>⑤ 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br>[본조신설 2015. 1. 20.] | | 부하도록 하여야 한다.<br>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br>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br>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16. 1. 21.]<br>**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br>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br>2. 기관명<br>3. 대표자<br>4. 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br>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br>6. 기술능력<br>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6. 1. 21.] |
|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 |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8과 같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br>②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br>③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분석 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br>[본조신설 2015. 1. 20.] | | |
|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5. 1. 20.] | |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br>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9와 같다. <개정 2016. 7. 21., 2020. 5. 27.><br>[본조신설 2016. 1. 21.] |
|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2.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br>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br>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br>3. 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br>4. 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br>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br>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5. 1. 20.] | | |
|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 2019. 12. 3.> | |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5. 3. 3., 2021. 7. 6., 2022. 11. 29.><br>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br>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② 삭제<2015. 7. 20.><br>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br>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br>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br>⑥ 삭제<2007. 8. 3.> | |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br>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br>4. 삭제<2011. 9. 27.><br>5. 삭제<2011. 1. 21.><br>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2. 1. 7.><br>1. 계량값<br>2. 위치정보<br>3. 영상정보<br>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br>③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신설 2020. 5. 27., 2022. 1. 7.><br>④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의2와 같다.<신설 2024. 6. 28.><br>[전문개정 2008. 8. 4.]<br>[시행일] 제20조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제3호,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br>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br>2.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br>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br>**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3. 5. 31., 2022. 1. 7.><br>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br>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br>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br>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br>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br>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br>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br>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br>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br>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br>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4. 1. 17., 2017. 10. 19.><br>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br>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br>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
|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br>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br>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br>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br>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br>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br>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7. 4. 18.] | |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br>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br>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br>[본조신설 2018. 3. 30.]<br>**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①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1. 4. 30.><br>1. 한국환경공단<br>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br>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비산재 및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1. 4. 30.><br>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br>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br>3.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br>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br>[본조신설 2018. 3. 30.]<br>**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br>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br>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br>2. 변경내용 및 사유<br>3.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8. 3. 30.]<br>**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br>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8. 3. 30.]<br>[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 3. 30.>] |
|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0. 7. 23.><br>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 | |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br>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br>[전문개정 2008. 8. 4.]<br>[제25조에서 이동 <2018. 3. 30.>]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07. 8. 3.] | | |
| **제20조** 삭제 | | |
| **제21조** 삭제 | | |
| **제22조** 삭제 | | |
| **제23조** 삭제 | | |
| **제24조** 삭제 | | |
| **제24조의2** 삭제 | | |
| **제24조의3** 삭제 | | |
| **제3장 삭제** <2007.8.3> | | |
|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 | |
|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 |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7. 23.><br>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br>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br>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br>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br>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br>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 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6. 1. 19.><br>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br>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br>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br>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 7. 29., 2011. 9. 7.> | 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8. 5. 17.><br>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br>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br>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br>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br>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br>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br>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7. 8. 3., 2010. 7. 23.><br>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7. 23., 2015. 7. 20.><br>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br>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br>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br>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br>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br>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br>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br>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 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br>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9. 27.><br>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8. 1. 17., 2020. 5. 27.><br>1. 폐기물 수집·운반업<br>가. 대표자 또는 상호<br>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br>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br>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br>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br>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br>가. 대표자 또는 상호<br>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br>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br>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2), 나)(1)·(2), 다)(2)·(3), 라)(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br>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22. 12. 27.><br>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8. 3., 2010. 7. 23.><br>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br>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br>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br>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br>4.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br>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 | | 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br>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br>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br>가. 대표자 또는 상호<br>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br>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바. 허용보관량<br>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6. 7. 21.><br>1. 폐기물 수집·운반업<br>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br>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br>⑩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br>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5. 7. 20.><br>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br>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br>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8. 3., 2017. 4. 18.><br>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br>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br>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br>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br>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br>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br>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br>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br>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br>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br>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br>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br>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br>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br>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7. 4. 18.><br>⑯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7. 8. 3., 2017. 4. 18.><br>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br>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br>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br>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br>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br>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br>4. 삭제<2011. 9. 27.><br>5. 삭제<2011. 9. 27.><br>6. 삭제<2011. 9. 27.><br>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신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설 2011. 9. 27.><br>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8. 8. 4., 2011. 9. 27.><br>⑦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 9. 27.><br><br>**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br>1. 폐기물 수집·운반업<br>가.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br>나. 영업구역의 변경<br>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br>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br>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br>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br>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br>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br>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br>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br>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br>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br>2)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br>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br>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br>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br>아. 허용보관량의 변경<br>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br>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br>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br>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br>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br>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br>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br>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br>아. 허용보관량의 변경<br>4. 삭제<2011. 9. 27.>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5. 삭제<2011. 9. 27.><br>6. 삭제<2011. 9. 27.><br>7. 삭제<2011. 9. 27.><br>8. 삭제<2011. 9. 27.><br>9. 삭제<2011. 9. 27.><br>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2., 2016. 7. 21.><br>1. 허가증 원본<br>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br>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br>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br>6.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br>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신설 2011. 9. 27., 2020. 5. 27.><br>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br>2.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br><br>**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br>1.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br>2.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br>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br>[본조신설 2016. 1. 21.]<br><br>**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2. 9. 24., 2016. 1. 21., 2016. 7. 1., 2016. 12. 30., 2018. 5. 17., 2018. 12. 31., 2019. 12. 20., 2022. 1. 7., 2023. 12. 28.><br>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br>가.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로 한다.<br>나.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br>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폐전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br>가.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br>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br>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br>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석탄재, 리튬이차전지 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br>나.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br>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br>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br>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br>나.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br>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 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br>7. 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br>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①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br>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할 것<br>가. 영상정보 수집장치,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및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것<br>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에 설치할 것<br>2. 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집·보관할 것<br>가.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수집할 것<br>나. 촬영·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보관할 것<br>② 제1항 각 호의 화재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21. 7. 6.]<br><br>**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br><br>**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1. 12. 30., 2016. 7. 21., 2018. 5. 17., 2023. 5. 31.><br>1. 상호의 변경<br>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br>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br>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br>8.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br>②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0. 10. 18., 2014. 4. 17., 2016. 7. 21., 2018. 12. 31.><br>**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br>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br>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br>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br>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 조제2항의 서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br>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br>④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br>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br>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4. 18.><br>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4. 18.> | |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br><br>**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br>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br>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br>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6. 1. 21.]<br><br>**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신고)**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제조시설의 소재지<br>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br>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 4. 18.><br>[본조신설 2015. 1. 20.]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상호<br>2. 대표자<br>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br>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6. 1. 21.]<br><br>**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br><br>**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0. 19.><br>1.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br>2.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3.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br>②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br>2. 전용용기의 구조도<br>3. 전용용기의 원료·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사 일정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br>④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용용기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자료와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br>⑤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16. 1. 21.]<br><br>**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br>1. 한국환경공단<br>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br>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br>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br>[본조신설 2016. 1. 21.]<br><br>**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br><br>**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별표 8의5와 같다. |
|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br>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br>2.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br>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br>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br>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 |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br>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br>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br>②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br>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br>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br>2. 폐기물 처분업<br>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br>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br>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br>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3. 폐기물 재활용업<br>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br>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br>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br>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br>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br>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br>⑦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9. 11. 26.] | |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br>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③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br>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br>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20. 5. 27.] |
| **제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br>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br>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br>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br>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br>[본조신설 2020. 5. 27.] |
| **제2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 | |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 | |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정 품목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대행자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br>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br>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br>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br>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br>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br>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br>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br>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br>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br>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 | | (이하 “특정품목대행자”라 한다)가 특정 품목의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특정품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리한 경우<br>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br>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br>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br>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br>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br>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br>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br>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br>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br>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br>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br>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15.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br>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br>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br>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br>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br>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br>[전문개정 2007. 8. 3.] | | |
|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br>3.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br>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br>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br>3.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br>4.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br>5.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br>6.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br>7.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br>8.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9. 제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br>[본조신설 2015. 1. 20.]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br>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br>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br>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br>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 |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 5. 19.><br>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 5. 19.><br>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br>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br>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0. 5. 19.><br>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br>**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br>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br>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호·제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1. 26.><br>[제목개정 2010. 7. 23.] | 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br>④ 삭제<2022. 6. 14.><br>[본조신설 2008. 7. 29.]<br><br>**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br>1의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br>2.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처리한 폐기물 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나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危害)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br>3.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br><br>**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br>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br>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br>[본조신설 2020. 5. 19.] | |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br>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br>③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br>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br>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br>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 |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br>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br>**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br>**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1. 9. 27., 2011. 10. 28., 2013. 5. 31., 2013. 12. 31., 2022. 11. 29.><br>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br>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br>3. 국·공립연구기관<br>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br>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br>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br>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 |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br>6의2.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항 제3호의 연구·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br>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br>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9. 27., 2011. 10. 28.><br>**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br>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br>2. 고온소각시설·열분해 소각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br>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br>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br>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br>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br>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br><br>**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br>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br>2.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br>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br>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br>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br>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br>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br>8.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br>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br>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 9. 27.><br>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br>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br>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6. 4. 28.><br>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br>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br>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br>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br>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br>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br>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br>다.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br>라. 별표 9 제2호 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br>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br>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br>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7.><br>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br>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br>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br>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br>5.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br>**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7., 2012. 9. 24.><br>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br>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br>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br>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br>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27., 2012. 9. 24.><br>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br>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br>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br>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2), 나)의 (1)·(2), 다)의 (2)·(3), 라)의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14) 또는 사목11)·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7.><br>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br>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br>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br>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br>**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2. 9. 24., 2014. 4. 17., 2015. 7. 29., 2018. 3. 30., 2019. 12. 31., 2020. 11. 27., 2022. 11. 29.><br>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br>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br>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br>나. 매립시설<br>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br>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br>마.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바. 소각열회수시설<br>사.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br>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2. 9. 24., 2022. 11. 29.><br>1. 소각시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2. 매립시설<br>3. 멸균분쇄시설<br>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br>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6. 소각열회수시설<br>7. 열분해시설<br>③ 삭제<2020. 11. 27.><br>④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br>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br>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5. 6. 10., 2015. 7. 29., 2016. 4. 28., 2016. 12. 30., 2018. 3. 30., 2022. 5. 3., 2022. 11. 29.><br>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br>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br>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br>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br>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br>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⑥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br>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3. 5. 31., 2020. 11. 27., 2022. 11. 29.><br>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br>가. 설계도면<br>나. 폐기물조성비 내용<br>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br>2. 매립시설의 경우<br>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br>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br>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br>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br>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br>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br>가. 설계도면<br>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br>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의 경우만 제출한다)<br>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br>가. 설계도면<br>나. 폐기물 성질·상태, 양, 조성비 내용<br>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br>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 11. 27.><br>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1. 27.><br>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2. 20., 2020. 11. 27.><br>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11. 27.><br>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br>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11. 26.><br>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 |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 4. 28., 2012. 6. 1.><br>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④ 삭제<2019. 11. 26.> | | 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2. 9. 24., 2014. 4. 17., 2015. 7. 29., 2018. 3. 30., 2019. 12. 31., 2020. 11. 27., 2022. 11. 29.><br>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br>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br>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br>나. 매립시설<br>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br>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br>마.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바. 소각열회수시설<br>사.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br>②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2. 9. 24., 2022. 11. 29.><br>1. 소각시설<br>2. 매립시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3. 멸균분쇄시설<br>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br>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6. 소각열회수시설<br>7. 열분해시설<br>③ 삭제<2020. 11. 27.><br>④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br>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br>⑤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5. 6. 10., 2015. 7. 29., 2016. 4. 28., 2016. 12. 30., 2018. 3. 30., 2022. 5. 3., 2022. 11. 29.><br>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br>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br>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br>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br>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br>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br>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br>⑥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10과 같다.<br>⑦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3. 5. 31., 2020. 11. 27., 2022. 11. 29.><br>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br>가. 설계도면<br>나. 폐기물조성비 내용<br>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br>2. 매립시설의 경우<br>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br>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br>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br>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br>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br>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br>가. 설계도면<br>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br>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br>가. 설계도면<br>나. 폐기물 성질·상태, 양, 조성비 내용<br>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br>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 11. 27.><br>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1. 27.><br>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2. 20., 2020. 11. 27.><br>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11. 27.><br>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br>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br>1. 한국환경공단<br>2. 국·공립연구기관<br>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br>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 |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br>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br>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br>3.「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br>④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br>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br>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br>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br>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br>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br>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 |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br>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br>[본조신설 2020. 11. 27.]<br>**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br>**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표 10의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br>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br>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br>가.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br>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br>4.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br>2. 제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br>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br>4. 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br>5.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br>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br>7.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br>8.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br>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⑨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br>[본조신설 2019. 11. 26.]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br>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br>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br>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상호·대표자·소재지<br>2. 지정번호<br>3. 지정 연월일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br>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br>5.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br>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20. 11. 27.]<br>**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1. 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br>2. 사업장 소재지<br>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br>②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br>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br>1. 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br>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br>3.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br>[본조신설 2020. 11. 27.]<br><br>**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br><br>**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br>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br>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2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br>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br>4.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br>[본조신설 2020. 11. 27.] |
|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br>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br>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 8. 3.><br>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br>**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br>1.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br>2.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br>3.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br>4.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5.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br>**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한국환경공단<br>2. 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br>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br>**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6. 1. 21.><br>1. 보건환경연구원<br>2. 한국환경공단<br>3. 삭제<2010. 1. 15.><br>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br>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br>6. 폐기물분석전문기관<br>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br>1. 삭제<2008. 8. 4.><br>2. 삭제<2008. 8. 4.><br>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br>④ 삭제<2016. 1. 21.>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br>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5. 1. 20.><br>⑧ 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br>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br>⑩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br>[본조신설 2016. 1. 19.] |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br>②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④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br><br>**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 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1.><br>②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1.><br>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범위·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7. 23., 2017. 1. 17., 2024. 1. 30.><br>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br>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br>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br>②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2. 6. 1., 2024. 1. 30.><br>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 | **제46조의2(허가·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영 별표 3 제3호의 재활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br>1. 퇴비화 시설(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은 제외한다)<br>2. 혐기성 분해시설<br>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br>[본조신설 2013. 5. 31.]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br>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5. 17., 2010. 7. 23., 2012. 6. 1., 2017. 1. 17., 2024. 1. 30.><br>1.「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br>2.「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br>3. 삭제<2009. 6. 9.><br>④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개정 2024. 1. 30.><br>[제목개정 2010. 7. 23.] | | |
|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 | **제47조(권리·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9. 11. 26.><br>②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9. 11. 26.><br>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br>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br>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 |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br>3. 허가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br>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br>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br>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승계신고인”이라 한다)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br>3. 승계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br>4.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br>5. 권리·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br>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br>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2019. 11. 26.><br>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2019. 11. 26.><br>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2020. 5. 26.><br>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1. 26.>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승계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br>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br>2. 폐기물 처분시설·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br>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br>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말한다.<br>1. 폐기물처리업자: 별표 7에 따른 기준<br>2.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별표 9에 따른 기준<br>3. 폐기물처리 신고자: 별표 17에 따른 기준<br>4. 전용용기 제조업자: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br>⑤ 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br>2. 허가신청인 또는 승계신고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br>[전문개정 2020. 5. 27.]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 | |
| **제34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br>1. 매립시설의 경우<br>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 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br>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br>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br>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br>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br>5.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br>6. 시멘트 소성로<br>7.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br>8.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br>**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 |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br>**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br>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br>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br>1. 한국환경공단<br>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br>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br>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
|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5. 7. 20.><br>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br>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br>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br>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br>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br>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br>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br>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br>1.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br>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br>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br>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br>5.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br>6.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8. 4., 2013. 7. 19., 2016. 4. 28., 2017. 10. 19., 2023. 5. 31., 2024. 6. 28.><br>1. 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br>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br>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br>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br>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br>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br>2. 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br>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br>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 5. 31.><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2023. 5. 31.><br>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br>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br>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br>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br>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br>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br>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br>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br>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br>2의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br>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br>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5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6. 30., 2023. 5. 31.><br>⑤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7., 2023. 5. 31.><br>**제51조(교육과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9. 27., 2016. 1. 21., 2016. 7. 21.><br>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br>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br>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br>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br>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br>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와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 8. 4., 2016. 1. 21., 2016. 7. 21., 2023. 5. 31.><br>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신설 2012. 11. 1.><br><br>**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br><br>**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br>1. 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br>2. 교육이수자의 실태<br>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br><br>**제57조(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기술관리인,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br>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br>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br>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br>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br>3. 삭제<2017. 4. 18.><br>4. 폐기물처리업자<br>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br>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br>6. 폐기물처리 신고자<br>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br>② 삭제<2007. 8. 3.><br>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 | |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1. 12. 30., 2014. 1. 17., 2016. 1. 21., 2016. 7. 21., 2017. 10. 19., 2024. 6. 28.><br>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br>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br>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 :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br>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br>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br>2의2. 삭제<2017. 10. 19.><br>3. 폐기물처리업자<br>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br>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19. 11. 26.> | | 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br>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br>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br>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br>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br>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br>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br>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br>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br>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br>6.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br>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 대장<br>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br>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20. 5. 27.><br>④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의 입력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5의2와 같다.<신설 2018. 5. 28., 2020. 5. 27.> |
|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br>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br>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br>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 | **제59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7., 2016. 1. 21.><br>1. 휴업·폐업의 경우<br>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br>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br>2. 재개업의 경우<br>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br>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br>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2016. 7. 21.><br>1. 휴업·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br>2. 재개업의 경우<br>가. 시험·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br>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br>1. 휴업·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br>2.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br>**제59조의2(휴업·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
|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br>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br>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br>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br>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와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0. 1. 15.,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2016. 1. 21., 2017. 10. 19., 2023. 5. 31., 2023. 12. 28.><br>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3의2. 삭제<2017. 4. 18.><br>4. 폐기물처리업자<br>5. 폐기물처리 신고자<br>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br>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2015. 1. 20.><br>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br>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 | 실적보고서,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br>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br>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하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br>2의2. 삭제<2017. 10. 19.><br>3. 폐기물처리업자<br>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별지 제50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br>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별지 제51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br>다.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별지 제5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폐석면을 매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br>라.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실적보고서<br>마. 폐기물 재활용업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br>4. 폐기물처리 신고자 : 별지 제52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br>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4. 1. 17.><br>1. 매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br>2. 배출이 끝나는 연도의 폐기물 처리 실적은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br>③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br>④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폐기물의 시험·분석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br>⑤ 삭제<2017. 10. 19.><br>**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 **제39조(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9. 11. 26.><br>1. 사업자 | |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br>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br>4.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br>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br>6.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br>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br>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br>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br>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br>11.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br>12.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br>13.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br>14. 제50조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br>15.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br>16.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br>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7. 23.> | |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8. 4.,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br>1.「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br>2.「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br>3.「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br>4.「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br>5.「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br>6. 삭제<2018. 1. 17.><br>7. 삭제<2018. 1. 17.><br>8. 삭제<2018. 1. 17.><br>9. 삭제<2018. 1. 17.><br>**제63조(시험·분석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br>1. 국립환경과학원<br>2. 보건환경연구원<br>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br>4. 한국환경공단<br>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br>가. 한국석유관리원<br>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br>6.「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br>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br>8. 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9.「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br>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
|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br>[본조신설 2010. 7. 23.] | | |
|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 | |
|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 |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조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23., 2013. 7. 16.><br>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br>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br>3. 삭제<2007. 8. 3.><br>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br>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9. 11. 26.><br>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br>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 한다.<개정 2021. 6. 15.><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br>③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br>**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7. 12. 28.><br>1.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 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 15일<br>2.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br>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개월<br>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1. 9. 7.><br>**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7. 29., 2011. 9. 7., 2021. 6. 15.><br>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 자를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br>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br>3. 삭제<2007. 8. 3.><br>⑤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br>⑥ 삭제<2007. 8. 3.><br>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br>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br>2.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br>⑧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7. 8. 3.><br>⑨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br>⑪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 |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br>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br>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제목개정 2008. 7. 29.]<br><br>**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① 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br>② 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br>③ 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삭제<2008. 7. 29.><br>[제목개정 2008. 7. 29.]<br><br>**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① 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9. 7., 2021. 6. 15.><br>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br>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br>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br>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9. 11. 26.> | 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6. 15.> | |
|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7. 11. 28.><br>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br>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
| **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br>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br>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br>[전문개정 2013. 7. 16.] | | |
| **제43조(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7. 23., 2012. 6. 1.> | | |
| **제44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 **제6장 보칙** | | |
|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br>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br>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br>2의2. 제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br>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br>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br>1. 법 제17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확인 서류의 제출<br>2. 삭제<2017. 10. 17.><br>3.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br>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신고 서류의 제출<br>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기록<br>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br>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 |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①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br>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 정보<br>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br>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br>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은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br>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8. 3.><br>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7. 8. 3., 2010. 7. 23.><br>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br>[제목개정 2007. 8. 3.] | 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br>[본조신설 2008. 7. 29.] | 한다.<br>[본조신설 2014. 1. 17.]<br>[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4. 1. 17.>]<br>**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08. 8. 4.]<br>[제63조의2에서 이동 <2014. 1. 17.>]<br>**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br>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br>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br>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br>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br>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개정 2012. 7. 3.><br>1. 삭제<2012. 7. 3.><br>2. 삭제<2012. 7. 3.><br>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2023. 12. 28., 2024. 6. 28.><br>1. 폐지<br>2. 고철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신설 2017. 4. 18.><br>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br>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br>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br>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신설 2007. 8. 3., 2010. 7. 23.><br>⑦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br>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br>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br>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br>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7. 8. 3., 2010. 7. 23.><br>[제목개정 2010. 7. 23.] | |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br>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br>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13. 7. 19., 2018. 5. 17.><br>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br>2.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br>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2022. 11. 29., 2023. 12. 28., 2024. 6. 28.><br>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폐타이어<br>3. 폐가전제품<br>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br>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br>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br>9. 동·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br>10. 1회용 컵<br>11.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말한다)<br>1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br>[전문개정 2011. 9. 27.]<br><br>**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4. 1. 17., 2016. 7. 21.><br>1.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br>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br>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br>2.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br>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br>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br>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br>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br>사. 폐기물을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 1. 17.><br>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br>1. 폐기물 수집·운반 변경신고의 경우<br>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br>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br>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br>2.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의 경우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br>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br>다.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br>라. 재활용시설의 종류<br>마. 재활용시설의 용량[폐기물처리 신고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다만,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br>바.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br>사.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br>[제목개정 2011. 9. 27.]<br>**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 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
|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br>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br>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br>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 |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1. 9. 7.><br>②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 9. 7.><br>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 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br>[본조신설 2008. 7. 29.]<br>**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br>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07. 8. 3.]<br>[제목개정 2010. 7. 23.]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br>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br>4.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br>[본조신설 2008. 7. 29.] | |
|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br>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용기·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 | |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br>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br>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 **제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② 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br>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9. 11. 26.] | |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br>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br>1.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br>2.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br>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br>[본조신설 2020. 5. 27.] |
|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 |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br>1.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7. 20., 2019. 11. 26.><br>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br>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br>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br>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br>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br>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br>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br>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 | 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br>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br>[본조신설 2020. 5. 19.] |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br>2.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br>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br>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조치 이행계획량<br>2.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br>3. 조치명령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br>③ 제2항에 따라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이행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조치 이행실적<br>2. 조치 미이행량·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br>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20. 5. 27.]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의무를 승계한 자<br>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br>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br>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26.><br>[전문개정 2010. 7. 23.]<br>[제목개정 2019. 11. 26.] | | |
|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9. 11. 26.] |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br>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br>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br>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br>5.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br>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br>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br>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br>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br>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br>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br>[본조신설 2020. 5. 19.] | |
|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br>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 **제23조의6(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br>1. 한국환경공단 |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4. 8. 16.><br>1. 제17조의4 및 별표 5의7 제2호에 따른 확인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위한 지도<br>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br>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br>4. 제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br>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br>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br>1.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br>2.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br>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19. 11. 26.] | 2.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br>②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20. 5. 19.] | 2.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br>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장치·장비 또는 설비의 확인 및 점검(원격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br>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점검<br>3.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br>4. 다음 각 목의 시스템에서 관리·제공하는 정보의 연계·분석 및 평가<br>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br>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br>5.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제도 연구<br>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br>④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해야 한다.<br>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입력·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20. 5. 27.] |
| **제48조의5(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 **제23조의7(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br>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br>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9. 11. 26.] | 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br>②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br>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br>[본조신설 2020. 5. 19.] | |
| **제49조(대집행)**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9. 11. 26.><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제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br>1.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br>2.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br>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br>③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br>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11. 26.> | | |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 | **제24조(사후관리 대상)** 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1., 2013. 7. 16.><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br>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br>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2017. 4. 18.><br>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br>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br>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 시설"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br><br>**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br>1. 한국환경공단<br>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31., 2016. 1. 21.><br>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br>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br>나. 사후관리 추진일정<br>다. 빗물배제계획<br>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br>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br>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br>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br>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br>② 제1항에 따른 신고(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만 해당한다)를 한 자는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31.><br>③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1. 21., 2017. 10. 19.>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6. 1., 2015. 1. 20., 2017. 4. 18.><br>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br>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 |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①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br>1. 사용종료 검사<br>2. 폐쇄 검사<br>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제2호만 해당한다)과 같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br>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중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br>1.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br>2.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br>3. 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br>4. 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br>④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개정 2016. 1. 21., 2016. 4. 28., 2017. 10. 19.><br>1. 최초 정기검사: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이 되는 날<br>2. 2회 이후의 정기검사: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이 되는 날<br>⑤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 2020. 11. 27.><br>⑥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9. 12. 20., 2020. 11. 27.><br>⑦ 제2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세부 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1. 27.><br>[본조신설 2013. 5. 31.] |
| | |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br>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1., 2017. 10. 19.><br>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br>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1. 1. 21.>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하려면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br>1.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br>2.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br>3.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br>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23. 8. 16.] | | **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br>2.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br>[본조신설 2024. 8. 16.] |
|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 |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2020. 5. 26.><br>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br>2.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br>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br>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③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6. 1. 19.><br>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6. 1. 19.><br>④ 삭제<2011. 9. 7.><br>⑤ 삭제<2011. 9. 7.><br>[제목개정 2016. 1. 19.]<br>**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①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6. 1. 19.><br>②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6. 1. 19.>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br>2. 법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br>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br>③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br>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br>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경우<br>[제목개정 2016. 1. 19.]<br>**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21.,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br>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br>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br>나.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br>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br>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br>다. 삭제 <2011.1.21><br>라. 삭제 <2011.1.21><br>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br>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br>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br>**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br>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br><br>**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2011. 9. 7.><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9., 2011. 9. 7.>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br>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br>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2016. 1. 19.><br>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br>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br>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br>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 7. 29., 2011. 9. 7.><br>**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br>**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br>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br>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br>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br>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 |
|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 |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1. 1. 21., 2013. 5. 28.><br>②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 | |
|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7. 16.><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br>③ 제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7. 16.> | |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br>1. 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br>2. 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br>3. 그 밖에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br>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br>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경제성·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4. 1. 17.] |
|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 | |
|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
|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br>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br>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3. 7. 16.><br>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연구<br>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연수<br>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br>④ 협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6.> |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법 제4조·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br>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br>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br>4. 한국환경공단<br>5.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br>6.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br>[본조신설 2014. 1. 14.]<br>[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4. 1. 14.>]<br>**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①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7. 16.><br>[본조신설 2007. 8. 3.]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4. 1. 14.><br>1.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br>2.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br>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br>②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4. 1. 14.><br>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4. 1. 14.><br>[본조신설 2008. 7. 29.]<br>[제3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의3은 제36조의4로 이동 <2014. 1. 14.>] | |
|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5. 7. 20., 2017. 4. 18., 2022. 12. 27.><br>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br>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br>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br>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br>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br>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br>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br>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 | | **제82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br>②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8. 3. 30.><br>③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개정 2018. 3. 30.><br>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br>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br>[제목개정 2015. 7. 20.] | | 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개정 2018. 3. 30.><br>1. 허가·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br>2. 허가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br>⑤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3. 30., 2020. 11. 27.><br>⑥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3. 30.><br>1.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br>2.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br>⑦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3. 30.><br>⑧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 정 2018. 3. 30.><br>[전문개정 2016. 7. 21.] |
|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br>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1.><br>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br>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br>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br>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br>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br>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br>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br>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br>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br>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br>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 | |
|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 6. 1.><br>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5. 1. 20.><br>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7. 12. 28., 2008. 7. 29., 2010. 6. 28., 2011. 1. 21., 2011. 9. 7., 2013. 5. 28.,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2018. 1. 16., 2020. 5. 19., 2022. 6. 14., 2024. 8. 13., 2024. 11. 5.><br>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확인<br>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br>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br>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br>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br>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br>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br>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br>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br>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br>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br>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br>라.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br>마.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br>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br>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br>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br>다.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br>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br>마.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br>바. 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br>사.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br>아.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br>자.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br>차.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br>카.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br>타.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br>파.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br>하.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br>거.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br>너.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br>더.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br>러.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br>머.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br>버.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br>서.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br>어.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br>저.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br>처.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br>커.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터.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br>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br>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br>②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7. 29.,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6. 7. 19., 2017. 10. 17., 2020. 5. 19., 2024. 11. 5.><br>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br>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br>1의3.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br>1의4. 삭제<2013. 5. 28.><br>1의5. 삭제<2017. 10. 17.><br>1의6. 삭제<2017. 10. 17.><br>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br>가.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br>나. 법 제25조제3항·제4항·제7항·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br>다.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br>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br>마.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지명령<br>바.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br>사.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br>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br>자.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br>차.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br>카.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br>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br>파.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br>하.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br>거. 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br>너. 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br>더. 삭제 <2008.7.29><br>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br>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br>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br>다.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br>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통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br>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br>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br>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br>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br>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br>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br>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1. 14., 2016. 1. 19., 2016. 7. 19., 2020. 11. 24.><br>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br>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br>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br>나.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br>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br>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분석 등<br>4.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br>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변경지정 및 그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내용의 공고<br>나.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의 평가<br>다. 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br>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br>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br>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분석 수수료의 고시<br>사. 삭제 <2016.7.19><br>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br>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br>나.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br>다.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br>라.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br>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br>6.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br>7.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br>**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4. 1. 14., 2016. 1. 19., 2019. 10. 29.><br>1. 삭제<2017. 12. 26.><br>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br>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br>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 구축·운영 업무<br>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29.><br>[본조신설 2011. 9. 7.] | |
|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 |
|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br>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br>2.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년 7월 1일<br>[본조신설 2015. 7. 20.] | | |
| **제7장 벌칙** | | |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br>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br>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 | |
|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br>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br>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br>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br>5.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br>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br>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br>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br>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br>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br>9.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br>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br>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br>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br>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br>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br>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br>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br>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br>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br>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br>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br>12. 삭제<2017. 4. 18.><br>13. 삭제<2017. 4. 18.><br>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br>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br>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br>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br>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br>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br>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br>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br>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br>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br>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br>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br>1의3.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br>3. 삭제<2007. 8. 3.><br>3의2.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br>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br>4.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br>4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br>4의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br>4의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br>5. 삭제<2015. 1. 20.>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br>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br>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br>9.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br>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br>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br>9의4.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br>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br>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br>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br>12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br>12의3. 제3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br>12의4.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12의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br>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br>14.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15. 삭제<2010. 7. 23.><br>16. 삭제<2010. 7. 23.><br>1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br>18.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br>19.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2023. 8. 16.><br>1. 삭제<2019. 11. 26.><br>1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 |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br>1의3.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br>1의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br>1의5.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br>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br>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br>2. 삭제<2015. 1. 20.><br>3. 삭제<2019. 11. 26.><br>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br>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br>3의4.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br>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br>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br>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br>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7. 삭제<2010. 7. 23.><br>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br>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br>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br>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br>1의2. 삭제<2019. 11. 26.><br>1의3.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br>2. 삭제<2023. 8. 16.><br>3. 삭제<2015. 7. 20.><br>4. 삭제<2010. 7. 23.><br>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br>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br>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br>8. 삭제<2007. 8. 3.><br>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br>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9의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br>9의4.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br>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br>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br>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br>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br>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br>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br>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br>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br>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br>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br>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br>4의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 |

| 폐기물관리법<br>[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986호, 2024. 11. 5., 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일부개정] |
|---|---|---|
|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br>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br>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br>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br>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br>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br>10. 삭제<2019. 11. 26.><br>11. 삭제<2019. 11. 26.><br>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br>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br>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 6. 1., 2013. 7. 16.><br>⑤ 삭제<2010. 7. 23.><br>⑥ 삭제<2010. 7. 23.><br>⑦ 삭제<2010. 7. 23.> | | |

0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목 차

##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 삭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8조(자원의 절약 등)
제8조의2 삭제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 · 구조 기준 등)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 · 구조 평가 등)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2(1회용 봉투 · 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 분할납부 등)
제2절 폐기물의 분리 · 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 운영 등)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분리배출 표시)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15조의2(빈용기 · 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7조(재활용의무율)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2조의2 삭제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 삭제
제24조의2 삭제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 운영 등)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 · 제조 신고 등)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 ·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 · 제조 금지명령 등)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조의13(권리 · 의무의 승계 등)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29조(분담금 등)
제30조(「민법」의 준용)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2조 삭제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 · 품질기준)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 · 용기의 구매촉진)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제34조의3(국 · 공유재산의 대부 · 사용 등)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34조의9 삭제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 · 운영)

**제5장 보칙**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제35조의2 삭제
제35조의3 삭제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 · 제출의무)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8조(권한의 위임 · 위탁)
제38조의2(청문)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제42조 삭제

#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제1장 총칙**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삭제<2017. 11. 28.><br>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br>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br>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br>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br>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br>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 |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철강슬래그<br>2. 석탄재<br>[전문개정 2009. 4. 6.]<br>**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br>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br>2. 법 제31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br>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br>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br>[전문개정 2009. 4. 6.]<br>**제4조의2(대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서 | **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br>1. 폐유리병을 가공·제조한 유리분말<br>2. 폐금속캔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br>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를 가공·제조한 재생원료<br>4. 폐타이어를 가공·제조한 고무분말<br>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제조한 유리분말<br>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br>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br>[본조신설 2024. 4. 11.]<br>[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4. 4. 11.>]<br>**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br>1.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br>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br>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br>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br>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br>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br>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br>1.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br>2.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br>[전문개정 2009. 4. 6.]<br><br>**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br><br>**제5조의2(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br>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br>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br>[본조신설 2009. 4. 6.] | 2.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가스 등 기체연료<br>3.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등 액체연료<br>4.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소각열(燒却熱)에너지<br>[본조신설 2014. 7. 22.]<br>[제1조의2에서 이동 <2024. 4. 11.>]<br><br>**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br><br>**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br>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br>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溶融施設) 등의 중간가공시설<br>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br>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前處理) 장치·장비·설비<br>5. 유기성(有氣性)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br>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같은 항 제6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같은 항 제7호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br>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br>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br>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br>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br>[전문개정 2008. 3. 21.] | | 및 장비<br>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br>[전문개정 2009. 4. 7.]<br>**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br>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br>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br>[전문개정 2009. 4. 7.] |
| **제2조의2** 삭제 | |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 | |
| **제4조** 삭제 | | |
| **제5조** 삭제 | | |
| **제6조** 삭제 | | |
| **제7조** 삭제 | | |
| **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br><개정 2017.11.28>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br><신설 2008.3.21> | | |
| **제8조(자원의 절약 등)** ①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br>②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08. 3. 21.] | | |
| **제8조의2** 삭제 | | |
|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7. 11. 28.><br>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br>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br>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br>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br>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br>가.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br>나.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br>다. 세제류<br>라. 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br>마. 의약외품류<br>바. 의류: 와이셔츠류, 내의류<br>사. 전자제품류(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 2017. 11. 28.><br>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08. 3. 21.] | 정한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br>아.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및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제품<br>3.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br>가. 삭제 <2015.11.26><br>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br>다.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br>라. 삭제 <2015.11.26><br>마. 삭제 <2009.12.31><br>[전문개정 2009. 4. 6.] | |
|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색상·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제3조의3(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11.><br>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11.>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br>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23. 3. 28.] | |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19. 12. 24.]<br>[제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 <2024. 4. 11.>]<br>**제3조의4(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선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4. 11.><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19. 12. 24.]<br>[제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7로 이동 <2024. 4. 11.>]<br>**제3조의5(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중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개정 2024. 4. 11.><br>② 제1항에 따른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된다.<br>[본조신설 2019. 12. 24.]<br>[제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4. 4. 11.>]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3. 3. 28.><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br>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br>[본조신설 2018. 12. 24.]<br>[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23. 3. 28.>] |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24. 3. 19.><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3. 19.><br>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br>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br>[본조신설 2019. 12. 24.] | |
|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br>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br>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8. 12. 24.]<br>[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삭제 | | **제3조의6(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4. 4. 11.><br>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11.><br>1.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br>2.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③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4. 11.><br>④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11.><br>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br>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단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19. 12. 24.]<br>[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6은 제3조의4로 이동 <2024. 4. 11.>] |
|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2023. 3. 28.><br>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br>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br>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br>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배달·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신설 2024. 4. 11.><br>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4. 11.><br>[전문개정 2014. 2. 12.]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br>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br>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br>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br>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23. 3. 28.><br>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br>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br>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8. 13.><br>[전문개정 2008. 3. 21.] | 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br>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br>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br>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 7. 21.><br>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br>2. 삭제<2018. 12. 31.><br>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br>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br>[전문개정 2014. 2. 11.] | |
|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br>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br>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br>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br>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br>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br>[본조신설 2007. 5. 11.] | | 1.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br>2.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br>3.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br>4.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br>[전문개정 2009. 4. 7.] |
|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br>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br>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br>[본조신설 2023. 3. 28.] |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1.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br>2.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br>3.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br>[본조신설 2024. 3. 19.] | |
|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① 정부는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자원순환(이하 이 항에서 "자원순환"이라 한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2. 12. 31.><br>1.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설계 시 자원순환이 쉬운 | **제9조(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br>1. 도시의 개발사업<br>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br>3. 항만의 건설사업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구조와 자재(資材)의 선택<br>2. 개발사업 시행 시 순환골재의 사용<br>3.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적절한 처리<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什器)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br>[전문개정 2008. 3. 21.] | 4. 도로의 건설사업<br>5. 공항의 건설사업<br>6. 관광단지의 개발사업<br>7.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br>8. 체육시설의 설치사업<br>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br>10.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br>[본조신설 2009. 4. 6.] | |
|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 2. 1., 2013. 8. 13., 2017. 1. 17., 2020. 5. 26.><br>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br>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br>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1., 2019. 11. 26.><br>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개정 2010. 9. 20., 2010. 12. 20., 2013. 11. 20., 2019. 12. 24., 2021. 5. 25., 2022. 6. 7.><br>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br>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br>3. 삭제<2024. 6. 4.><br>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br>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br>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 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 **제5조(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br>1.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결산보고서 등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br>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br>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br>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1., 2013. 8. 13.><br>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개정 2012. 2. 1., 2013. 8. 13., 2019. 11. 26., 2020. 5. 26.><br>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br>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br>⑤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2. 1.><br>⑥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개정 2011. 7. 21., 2012. 2. 1.><br>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 |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br>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br>나. 합성수지 섬유제품<br>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br>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br>②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개정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10. 22., 2017. 3. 29., 2018. 12. 31., 2021. 5. 25.><br>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br>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見本品)<br>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br>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br>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br>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br>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br>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br>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품 및 그 포장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br>[전문개정 2009. 4. 7.]<br>[제목개정 2012. 11. 1.]<br>**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①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br>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20. 5. 27.]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 2. 6., 2012. 2. 1.><br>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br>[전문개정 2008. 3. 21.] |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br>2)「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br>3)「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br>4)「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br>5)「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br>6)「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br>7)「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br>8)「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주사침·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br>9) 삭제 <2021.5.25><br>바. 삭제 <2022.6.7><br>[전문개정 2009. 4. 6.]<br>**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br>**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9.><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개정 2012. 10. 29.><br>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4. 6. 4.><br>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9.><br>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개정 2012. 10. 29.><br>[전문개정 2009. 4. 6.]<br>[제목개정 2012. 10. 29.]<br><br>**제13조(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율)**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재료·용기별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회수·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을 말한다.<개정 2018. 12. 31.><br>1.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br>2.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재활용원료의 양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br>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회수·재활용 방법에 따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라 회수·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출고·수입실적 및 회수·재활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7. 2.><br>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재활용된 양에 해당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을 감액한다.<br>[본조신설 2013. 1. 22.]<br><br>**제14조의2(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개정 2009. 12. 24., 2013. 1. 22.><br>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개정 2009. 12. 24.><br>[전문개정 2009. 4. 6.]<br><br>**제28조의4(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br>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br>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br>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8. 22.><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21. 11. 23.]<br>[제28조의3에서 이동 <2023. 8. 22.>] | |
|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br>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br>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br>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br>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br>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br>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 |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5. 28.><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br>④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을 받은 경우<br>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br>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br>4. 경매가 개시된 경우<br>5. 법인이 해산한 경우<br>6. 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br>⑤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br>[본조신설 2013. 8. 13.]<br>[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3. 8. 13.>] |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br>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br>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부담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br>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br>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br>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br>[본조신설 2014. 2. 11.]<br>[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4.2.11>]<br>**제14조의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법 제12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br>**제14조의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
| **제2절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br><신설 2008.3.21, 2020.6.9> | | |
|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 |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br>[본조신설 2008. 3. 21.]<br>[제12조의2에서 이동 <2013. 8. 13.>] | 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2. 11.><br>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br>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br>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br>[전문개정 2009. 4. 6.]<br>[제14조의3에서 이동 <2014. 2. 11.>] | 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 2. 12.><br>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2. 12., 2014. 7. 22.><br>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행기간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이행기간 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 준수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2., 2014. 7. 22.><br>[전문개정 2009. 4. 7.]<br>[제10조의2에서 이동 <2014. 2. 12.>] |
|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br>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br>[전문개정 2008. 3. 21.] | | |
|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br>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br>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br>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⑥ 그 밖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08. 3. 21.] |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인구 3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br>1. 중고물품 진열을 위한 재활용센터의 바닥면적 합이 150제곱미터 이상일 것<br>2.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작업공간을 따로 설치할 것<br>3. 진열되지 아니하는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br>4.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에 재활용센터의 운영·관리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br>5. 중고물품의 수거·운반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보유할 것<br>6. 중고물품의 교환·판매 담당자, 수리 담당자 및 수거·운반 담당자를 각각 고용할 것<br>[전문개정 2009. 4. 6.] | |
|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br>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26.><br>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br>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br>3. 제4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br>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br>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br>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br>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br>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br>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br>[본조신설 2013. 5. 22.] | | |
| **제14조(분리배출 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제품·포장재를 말한다.<br>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장재. 다만, 다음 각 목의 포장재는 제외한다.<br>가.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br>다.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br>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br>[전문개정 2009. 4. 6.] | |
|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① 제품의 제조자등은 유통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새로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br>② 정부는 제품의 제조자등이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08. 3. 21.] | | |
|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9.><br>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br>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말한다.<br>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br>1.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br>2. 음료류<br>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br>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br>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색상·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br>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7. 1.><br>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7. 1.><br>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표준용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20. 6. 9.><br>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br>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br>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br>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br>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 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br>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br>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br>④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음료류를 말한다.<br>[전문개정 2021. 11. 23.]<br><br>**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 11. 23.><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21. 6. 8.]<br><br>**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 | 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16. 1. 21.]<br><br>**제12조의2(자원순환보증금액)** 법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br><br>**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 7. 1.><br>1. 임차료, 인건비 등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이하 “빈용기”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br>2. 차량·유류비, 인건비 등 빈용기의 운반에 드는 비용<br>②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7. 1.><br>③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7. 1.><br>④ 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br>⑥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20. 6. 9.><br>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br>[본조신설 2008. 3. 21.]<br>[제목개정 2015. 1. 20., 2020. 6. 9.] | 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1. 5. 25.><br>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 1. 19., 2021. 5. 25., 2021. 11. 23.><br>1.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br>2.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br>[전문개정 2009. 4. 6.]<br>**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1. 19., 2016. 12. 30., 2022. 5. 3., 2022. 6. 7.>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 7. 1.><br>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개정 2022. 7. 1.><br>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br>⑦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22. 12. 2.><br>1. 임차료, 인건비 등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br>2. 차량·유류비,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br>3. 표준용기 외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br>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br>⑨ 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12. 2.>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br>2.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7. 21., 2022. 5. 3.><br>1. 법 제25조의4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br>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br>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징수<br>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br>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br>가. 법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br>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br>다. 법 제41조제2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 12. 24.,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2. 11., 2014. 7. 21., 2017. 12. 26., 2019. 7. 2., 2019. 12. 24., 2021. 5. 25., 2021. 6. 8., 2022. 6. 7., | [전문개정 2016. 1. 21.]<br>[제목개정 2022. 12. 2.]<br>**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br>**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7. 1., 2022. 12. 2.><br>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6. 1. 21.]<br>[제목개정 2022. 12. 2.]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2023. 8. 22., 2024. 3. 19., 2024. 7. 2.><br>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br>1의2. 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중단명령의 준수 여부 확인<br>1의3.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br>1의4.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표시 준수 여부 확인<br>1의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br>1의6.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br>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br>2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br>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br>4.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br>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공개<br>4의3.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br>4의4.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br>4의5.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운영<br>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br>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br>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징수 및 반환<br>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br>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br>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br>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br>1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정산 및 반환<br>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br>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br>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br>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br>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br>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br>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br>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br>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br>18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 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br>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 결과의 통보<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신설 2013. 11. 20., 2014. 7. 21.><br>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신설 2016. 1. 19., 2021. 11. 23.><br>[전문개정 2009. 4. 6.]<br>[제목개정 2019. 12. 24.] | |
|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① 제15조의2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하 "미반환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20. 6. 9.><br>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br>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br>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br>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br>4의2. 용기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br>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br>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br>②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 용기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0., 2020. 6. 9.><br>[본조신설 2008. 3. 21.]<br>[제목개정 2020. 6. 9.] | |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 12. 2.><br>1. 빈용기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빈용기의 규격별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br>(해당 연도에 출고된 규격별 용기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규격별 빈용기 개수) × 빈용기의 규격별 자원순환보증금액<br>2. 1회용 컵의 미반환보증금: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br>(해당 연도에 판매된 1회용 컵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1회용 컵 개수) ×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br>②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6. 1. 21., 2022. 7. 1.><br>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2.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br>3. 전년도에 미반환보증금을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br>③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신설 2016. 1. 21., 2022. 7. 1., 2022. 12. 2.><br>1.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이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용기등이 회수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양<br>2.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유리병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지원금 단가<br>[전문개정 2009. 4. 7.]<br>[제12조의4에서 이동 <2016. 1. 21.>] |
|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① 법 제15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매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7. 1., 2022. 12. 2.><br>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6. 1. 21.]<br>[제목개정 2022. 12. 2.] |
|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 | | **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① 법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부과·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20. 6. 9.] | |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별로 구분하여 합의로 정한 금액(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 7. 1.><br>1. 임차료, 인건비 등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빈용기(이하 “빈용기”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br>2. 차량·유류비, 인건비 등 빈용기의 운반에 드는 비용<br>②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한 경우 합의가 있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합의된 취급수수료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7. 1.><br>③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취급수수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신청 사유 및 취급수수료의 산정근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7. 1.><br>④ 제3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 7. 1.><br>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를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개정 2022. 7. 1.>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취급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한다.<br>⑦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신설 2022. 12. 2.><br>1. 임차료, 인건비 등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1회용 컵(이하 “1회용 컵”이라 한다)의 보관에 드는 비용<br>2. 차량·유류비,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운반에 드는 비용<br>3. 표준용기 외의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br>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처리지원금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br>⑨ 제8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이하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및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고 처리지원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12. 2.><br>[전문개정 2016. 1. 21.]<br>[제목개정 2022. 12. 2.]<br>**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br>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br>1. 환경·법률·경제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br>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br>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br>④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br>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br>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br>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br>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br>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br>[본조신설 2021. 6. 11.] |
|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br>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br>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제17조의2(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 11. 23.> |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용기의 사용대상 제품, 용량·색상·모양 등 규격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br>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하여야 한다.<br>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br>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br>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br>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br>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br>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br>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br>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br>[본조신설 2020. 6. 9.]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5조의6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직 및 재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21. 6. 8.]<br>**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1. 19., 2016. 12. 30., 2022. 5. 3., 2022. 6. 7.><br>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br>2.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7. 21., 2022. 5. 3.><br>1. 법 제25조의4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br>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br>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징수<br>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br>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서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7. 1.><br>③ 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을 받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표준용기 사용등록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 7. 1.><br>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표준용기 사용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16. 1. 21.]<br>**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운영)** ① 법 제15조의6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br>② 법 제15조의6제3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 12. 2.><br>1.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사업<br>2.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사업<br>3. 조사·연구사업<br>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br>5. 1회용컵보증금대상사업자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 라벨의 제작·공급<br>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21. 6. 11.]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가. 법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br>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br>다. 법 제41조제2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 12. 24.,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2. 11., 2014. 7. 21., 2017. 12. 26., 2019. 7. 2., 2019. 12. 24., 2021. 5. 25., 2021. 6. 8., 2022. 6. 7., 2023. 8. 22., 2024. 3. 19., 2024. 7. 2.><br>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br>1의2. 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중단명령의 준수 여부 확인<br>1의3.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br>1의4.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표시 준수 여부 확인<br>1의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br>1의6.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br>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br>2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br>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br>4.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br>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공개<br>4의3.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br>4의4.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br>4의5.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운영<br>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br>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br>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br>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br>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br>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br>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br>1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정산 및 반환<br>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br>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br>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br>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br>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br>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br>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br>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br>18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 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br>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br>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 결과의 통보<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신설 2013. 11. 20., 2014. 7. 21.><br>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신설 2016. 1. 19., 2021. 11. 23.><br>[전문개정 2009. 4. 6.]<br>[제목개정 2019. 12. 24.] | |
| **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신설 2008.3.21> | | |
|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 |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 **제3조의3(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19. 11. 26.><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br>③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신설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2020. 6. 9.><br>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br>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br>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br>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br>다.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br>④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 |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br>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br>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br>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br>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br>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br>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br>바. 부탄가스제품<br>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 | 야 한다.<개정 2024. 4. 11.><br>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11.><br>③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19. 12. 24.]<br>[제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6으로 이동 <2024. 4. 11.>]<br>**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br>1. 매출액·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출고·수입량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재의 출고·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20. 5. 27.]<br>[종전 제13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20. 5. 27.>]<br>**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br>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br>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br>[전문개정 2008. 3. 21.] | 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br>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br>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br>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br>카.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br>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br>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br>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br>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br>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br>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br>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br>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 |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①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란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원료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를 말한다.<br>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br>1.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br>2.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br>3. 다음 각 목의 서류(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한다)<br>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나. 제품·포장재별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사용량 산출 기초자료<br>③ 제2항에 따라 실적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br>[전문개정 2023. 1. 10.]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br>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br>라. 1회용 비닐장갑<br>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br>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br>가. 수은전지<br>나. 산화은전지<br>다. 니켈카드뮴전지<br>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br>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br>바. 니켈수소전지<br>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br>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br>나.「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br>다.「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br>라.「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br>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br>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압축·폭발·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br>나.「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br>다.「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br>라.「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br>마.「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br>7. 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br>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br>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br>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br>9. 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br>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br>1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br>12.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재활용하려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br>[전문개정 2009. 4. 6.]<br>**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이란 별표 4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br>**제20조(회수·재활용의 위탁)** 법 제16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br>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br>3.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br>4. 삭제<2013. 11. 20.>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br>6.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중 재활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자<br>7. 삭제<2013. 11. 20.><br>8.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br>[전문개정 2009. 4. 6.]<br>[제목개정 2016. 1. 19.]<br>**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 **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14. 1. 21.><br>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 |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말하며,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재활용해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1. 5. 25.><br>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개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08. 3. 21.] | 정 2016. 1. 19., 2021. 5. 25., 2021. 11. 23.><br>1.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br>2.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한다)가 전년도에 제품·포장재에 사용된 양을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한 자료(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고시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반영하여야 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재활용의무율 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율 또는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br>[전문개정 2009. 4. 6.]<br>**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br>제22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br>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로서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1. 5. 25.><br>[전문개정 2009. 4. 6.] | |
|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 |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br>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br>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 3. 28.><br>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3. 3. 28.><br>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br>2.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br>[본조신설 2013. 5. 22.] | 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1. 19., 2016. 12. 30., 2022. 5. 3., 2022. 6. 7.><br>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br>2.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7. 21., 2022. 5. 3.><br>1. 법 제25조의4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br>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br>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징수<br>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br>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br>가. 법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br>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br>다. 법 제41조제2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12. 24.,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2. 11., 2014. 7. 21., 2017. 12. 26., 2019. 7. 2., 2019. 12. 24., 2021. 5. 25., 2021. 6. 8., 2022. 6. 7., 2023. 8. 22., 2024. 3. 19., 2024. 7. 2.><br>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br>1의2. 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중단명령의 준수 여부 확인<br>1의3.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br>1의4.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표시 준수 여부 확인<br>1의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br>1의6.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br>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br>2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br>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br>4.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br>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공개<br>4의3.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br>4의4.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br>4의5.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운영<br>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br>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br>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br>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br>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br>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br>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br>1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정산 및 반환<br>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br>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br>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br>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br>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br>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br>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br>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br>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br>18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 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br>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 결과의 통보<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신설 2013. 11. 20., 2014. 7. 21.><br>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신설 2016. 1. 19., 2021. 11. 23.><br>[전문개정 2009. 4. 6.]<br>[제목개정 2019. 12. 24.] | |
|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5. 22., 2015. 1. 20., 2019. 11. 26., 2020. 6. 9.><br>1.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br>2. 재활용사업공제조합<br>3. 보증금대상사업자<br>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br>[전문개정 2008. 3. 21.]<br>[제목개정 2013. 5. 22.] | **제24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포장재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br><br>**제2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5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24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와 유통지원센터의 회수·운반 계획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br>1. 회수·재활용 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br>2.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 계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운반 계획을 말한다)<br>3.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하는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br>② 영 제24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br>1.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 계획<br>2.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br>[전문개정 2009. 4. 7.]<br>[제목개정 2013. 11. 22.]<br>**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br>①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br>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br>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br>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br>② 영 제26조에 따라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 12. 31., 2013. 11. 22., 2016. 1. 21., 2022. 7. 1., 2023. 8. 22.><br>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 실적 증명서류<br>2. 전년도 빈용기(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는 포함한다) 회수 실적 증명서류<br>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 실적 및 제조 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빈용기의 재활용 실적 증명서류<br>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의 빈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다른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용기에 대하여 지급한 것은 포함한다) 지급 명세<br>[전문개정 2009. 4. 7.]<br>[제목개정 2013. 11. 22.] |
|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br>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 | **제14조(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br>1.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한 경우<br>2. 수입업자가 수입한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한 경우<br>3.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부과·징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제10조(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br>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br>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다.<신설 2023. 3. 28.><br>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br>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br>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br>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br>5. 경매가 개시된 경우<br>6. 법인이 해산한 경우<br>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br>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8.><br>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3. 28.><br>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br>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br>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 2023. 3. 28.>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br>[전문개정 2021. 5. 25.]<br>**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5. 25.><br>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재활용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 11. 20., 2016. 1. 19.><br>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9., 2013. 11. 20.><br>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개정 2012. 10. 29., 2013. 11. 20.><br>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신설 2023. 8. 22.><br>[전문개정 2009. 4. 6.]<br>**제2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 나.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br>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br>2.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br>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br>[전문개정 2023. 4. 19.]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br>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br>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3. 3. 28.><br>⑧ 재활용부과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 7. 21., 2023. 3. 28.><br>⑨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 2. 6., 2023. 3. 28.><br>⑩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 2023. 3. 28.><br>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 3. 28.><br>[전문개정 2008. 3. 21.] |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br>④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br>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br>⑥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br>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br>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br>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br>[본조신설 2023. 8. 22.]<br>[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23.8.22>]<br>**제28조의3(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개정 2009. 12. 24., 2013. 11. 20., 2014. 10. 22., 2023. 8. 22.><br>1. 환경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br>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br>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br>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한다.<개정 2009. 12. 24.><br>[전문개정 2009. 4. 6.]<br>[제2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3은 제28조의4로 이동 <2023. 8. 22.>] | |
|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①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항·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 | **제28조의4(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br>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br>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br>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br>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br>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21. 1. 5.] |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br>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2조제4항·제19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해당 부담금등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8. 22.><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21. 11. 23.]<br>[제28조의3에서 이동 <2023. 8. 22.>] | |
|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br>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br>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br>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br>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br>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br>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br>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br>[전문개정 2008. 3. 21.]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제21조** 삭제 | | |
| **제22조** 삭제 | | |
| **제22조의2** 삭제 | | |
|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br>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br>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br>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br>[전문개정 2008. 3. 21.] | **제32조(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br>1. 종이제조업<br>2. 유리용기제조업<br>3. 제철 및 제강업<br>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br>[전문개정 2009. 4. 6.]<br>**제33조(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능력 및 재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br>가. 종이제조업: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br>나. 유리용기제조업: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br>다. 제철 및 제강업: 조강(粗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br>라.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플라스틱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br>2.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고려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은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br>3.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br>4.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한다.<br>[전문개정 2009. 4. 6.] | |
| **제24조** 삭제 | | |
| **제24조의2** 삭제 | | |
|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20.><br>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br>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br>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br>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br>[전문개정 2008. 3. 21.] | **제3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 현황, 기술 능력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br>가. 철강슬래그: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자<br>나. 석탄재: 전력을 연간 1억킬로와트시 이상 공급하는 자<br>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부산물을 분리·파쇄·선별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 특성과 국내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안을 준수하도록 한다.<br>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한다.<br>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br>[전문개정 2009. 4. 6.] | |
|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br>[전문개정 2014. 1. 21.] | | |
|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 | |
|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① | |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br>2.「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br>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br>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br>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br>⑥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1. 5.> | |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9.><br>1.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수입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br>2.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가격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br>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계획서<br>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제조국·제조업체) 및 공급량(공급업체)<br>나. 고형연료제품의 국내 반입을 위한 운송수단 및 국내 반입 후 실시할 전수방역 계획(전수방역 계획의 경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은 제외하며, 별표 7 제2호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중 비성형제품은 제조과정에서 150℃ 이상으로 1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밀봉 포장했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제외한다)<br>다.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br>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운반·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br>②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29.><br>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6호 또는 제7호에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⑦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5.><br>[전문개정 2014. 1. 21.] | |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증 사본<br>2.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조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br>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br>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계획서<br>가.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제조량 및 공급량(공급업체)<br>나.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처리계획<br>다. 고형연료제품의 제조·보관·공급·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br>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4호의5서식과 같다.<br>[본조신설 2014. 7. 22.]<br>**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나 제조자의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br>2.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br>3.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종류가 변경되거나 구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br>4.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연간 예상 수입량 또는 제조량[100분의 30 이상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5.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국 또는 제조업체<br>② 법 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br>1.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 원본<br>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br>3.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서 사본[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신고일 이전 분기에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br>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br>[본조신설 2014. 7. 22.] |
|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br>1. 모양 및 크기<br>2. 발열량<br>3. 수분 함유량 | |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br>②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br>1. 발열량<br>2. 수은 함유량<br>3. 염소 함유량<br>4. 황분 함유량<br>③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4. 금속성분 함유량<br>5.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br>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br>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br>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⑤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⑦ 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br>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br>[전문개정 2014. 1. 21.] | |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br>⑤ 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전문개정 2020. 5. 27.]<br><br>**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4. 29., 2020. 5. 27.><br>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전문개정 2014. 7. 22.]<br><br>**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5. 27.><br>②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br>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0. 5. 27.><br>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별표 7의2 제2호에 따른 우수등급 이상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비율을 말한다) 이상으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품질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br>[전문개정 2014. 7. 22.]<br>[제목개정 2020. 5. 27.] |
|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br>②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 |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고형연료제품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품질명세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0. 5. 27.>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③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br>④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4. 1. 21.] | |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br>1. 폐자원에너지센터<br>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br>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br>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br>③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규격·성상, 원소 성분 함유량 등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20. 5. 27.><br>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다시 시험을 의뢰하여 새로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br>1.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br>2.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br>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료채취 및 시험의 세부 절차·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전문개정 2014. 7. 22.] |
|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① 고형연료 | |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등)**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1. 28.><br>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br>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br>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br>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br>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7. 11. 28.><br>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br>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br>3.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방법·사항·조건, 변경신고의 절차·방 | |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8.><br>1. 별표 8의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br>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명세서 사본<br>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제20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거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과 같다.<개정 2018. 11. 28.><br>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8. 11. 28.><br>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br>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br>나. 화력발전시설<br>다. 열병합발전시설<br>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br>2. 발전시설(제1호나목 및 다목의 발전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일 것<br>3.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또는 제철소의 노(爐)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일 것<br>4. 보일러시설(제3호의 산업용보일러는 제외한다)로서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일 것<br>④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법과 허가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1. 28.><br>[본조신설 2014. 1. 21.]<br>[제목개정 2017. 11. 28.] | |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2018. 11. 28.><br>1.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연료로 추가하려는 때<br>2. 별표 1 제10호나목의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때<br>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증가시키려는 때(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br>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br>⑤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8.><br>1.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원본<br>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3.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한 것으로 한정한다)<br>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8. 11. 28.><br>⑦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의7제4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28.>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전문개정 2014. 7. 22.]<br>[제목개정 2018. 11. 28.] |
|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br>②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23. 3. 28.><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3. 28.><br>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3. 28.><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3. 28.><br>[본조신설 2014. 1. 21.] | **제35조의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8. 22.><br>1. 개선명령의 이유 및 내용<br>2. 개선명령의 이행기간<br>3.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br>4. 그 밖에 개선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br>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와 개선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8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8. 22.><br>[본조신설 2014. 7. 21.] |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br>**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8. 11. 28., 2020. 5. 27.><br>1. 최초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br>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br>3. 변경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br>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再開)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br>나. 제20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변경 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br>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8., 2020. 5. 27.><br>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br>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명세서<br>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br>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4서식의 정기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4. 29., 2018. 11. 28., 2020. 5. 27.><br>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4. 7. 22.] |
|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br>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4. 1. 21.] | |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br>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9. 12. 20.><br>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br>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br>[본조신설 2014. 7. 22.] |
|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 **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 등)** ①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br>②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하려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 대상자에게 다음 각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은 제2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분 함유량에 관한 품질기준(이하 "수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br>[본조신설 2014. 1. 21.] | |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br>1.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 명령의 이유 및 내용<br>2.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의 기간이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개선명령의 경우 그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을 포함한다)<br>3. 그 밖에 명령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br>[본조신설 2014. 7. 22.] |
|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br>1. 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br>2. 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br>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3. 3. 28.><br>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br>[본조신설 2014. 1. 21.] |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br>②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br>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br>[본조신설 2014. 7. 21.]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br>②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br>[본조신설 2014. 1. 21.] | | |
| **제25조의13(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4. 1. 21.] | | **제20조의12(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15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8.><br>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 원본<br>2.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br>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허가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8. 11. 28.><br>[본조신설 2014. 7. 22.] |
|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 | |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br>②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야 한다.<br>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br>2.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br>3. 폐자원에너지 생산·사용 시설<br>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br>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br>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br>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br>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br>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가.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br>나.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br>다.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br>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4. 1. 21.] | | 품질기준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br>1. 발열량<br>2. 수은 함유량<br>3. 염소 함유량<br>4. 황분 함유량<br>③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기준을 말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품질등급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br>⑤ 법 제25조의5제7항에 따른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전문개정 2020. 5. 27.]<br><br>**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①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br>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보: 해당 월의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br>2. 법 제25조의14제3호 또는 제4호의 정보: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br>② 제1항에 따라 입력하여야 할 정보 중 법 제25조의14제1항제4호의 품질검사 결과 등은 해당 품질검사 결과서를 전자이미지로 변환하여 입력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력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4. 7. 22.] |
|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br>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br>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br>3.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br>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br>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br>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br>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br>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br>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br>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br>②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4. 1. 21.] | | 품질검사 신청서를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폐자원에너지센터는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를 말한다) 또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한 후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4. 29., 2020. 5. 27.><br>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검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전문개정 2014. 7. 22.]<br>**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① 법 제25조의15제3항에 따라 공단은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조직·정원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4. 7. 22.] |
|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① 제25조의14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br>②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br>③ 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 **제35조의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명칭<br>2. 사무소의 소재지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br>④ 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br>[전문개정 2014. 1. 21.] |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br>4. 회원의 명단<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의 향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14. 7. 21.]<br>**제35조의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목적<br>2. 명칭<br>3. 사무소의 소재지<br>4. 사업의 내용<br>5. 회원의 자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br>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br>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br>8.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br>②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br>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br>③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대표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4. 7. 21.]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개정 2013.5.22> | | |
|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br>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br>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br>④ 삭제<2016. 5. 29.><br>[전문개정 2008. 3. 21.] | **제21조(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해당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8. 13.><br>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br>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br>3.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br>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br>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br>③ 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3. 8. 13.><br>[전문개정 2008. 3. 21.] | |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삭제<2013. 11. 22.><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2.><br>④ 삭제<2013. 11. 22.><br>⑤ 삭제<2013. 11. 22.><br>[전문개정 2009. 4. 7.]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20. 6. 9.><br>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br>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 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br>④ 삭제<2020. 6. 9.><br>[본조신설 2013. 5. 22.] | | |
|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5. 26.><br>1. 목적·사업범위·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br>2.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템 구축계획서<br>3.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계획서<br>4.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3. 5. 22.] | |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3. 11. 22.] |
|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 9.><br>②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13. 8. 13.] | | |
|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br>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br>3.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br>[본조신설 2013. 8. 13.] | | **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br>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br>2. 사업결산보고서<br>3.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br>4. 사업결과 보고서<br>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24. 1. 9.] | | **제23조의2(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br>②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br>1. 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결산보고서: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산보고서<br>2. 법 제2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상황: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총회 및 이사회 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동상황 보고서<br>3. 법 제2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결과 보고서: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br>[본조신설 2024. 7. 10.]<br>[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24. 7. 10.>] |
|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br>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br>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br>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br>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br>5.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및 회수·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br>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br>7.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br>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br>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br>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br>[본조신설 2024. 1. 9.] | | |
|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목적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2. 명칭<br>3. 사업에 관한 사항<br>4. 사원에 관한 사항<br>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br>6. 총회에 관한 사항<br>7. 이사회에 관한 사항<br>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br>9.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br>10.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br>11. 해산에 관한 사항<br>[본조신설 2024. 1. 9.] | | |
|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br>②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br>③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br>④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24. 1. 9.] | | |
|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 **제23조의3(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br>②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r>③ 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br>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사람 1명<br>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br>3.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br>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br>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br>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br>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br>④ 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br>[본조신설 2016. 1. 21.]<br>[제2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24. 7. 10.>] |
|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 **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br><개정2017.11.28> | | |
|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 |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2013. 5. 22., 2014. 1. 21., 2017. 11. 28.><br>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br>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br>3.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br>4.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br>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br>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br>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br>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br>②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4. 1., 2009. 5. 21.><br>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br>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08. 3. 21.] | 1.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br>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br>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br>[전문개정 2009. 4. 6.]<br>**제37조(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
| **제32조** 삭제 | | |
|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
|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 | **제23조의4(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br>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br>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br>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br>3. 재생원료 사용비율<br>③ 환경부장관은 제품·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br>④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24. 4. 11.]<br>[제23조의3에서 이동 <2024. 7. 10.>] |
|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br>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08. 3. 21.] |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br>1. 한국환경공단<br>2. 삭제<2009. 12. 24.><br>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br>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br>[전문개정 2009. 4. 6.]<br>**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br>**제43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 지역을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장용지의 공급 필요성과 수요 면적 및 공급 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09. 4. 6.] | |
|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
| **제34조의3(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br>[전문개정 2008. 3. 21.]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br>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br>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br>[전문개정 2008. 3. 21.] |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br>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포장재<br>2. 폐지(廢紙)<br>3. 고철<br>4.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br>[전문개정 2009. 4. 6.] | |
|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br>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 | **제25조의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34조의5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개정 2023. 12. 29.><br>1. 수출용 중고의류<br>2. 유리 및 유리병류(수거 후 세척된 것으로 한정한다)<br>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br>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비축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br>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1. 5., 2023. 3. 28.><br>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가 발생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 대하여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 5.><br>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보관·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1. 5.><br>[본조신설 2008. 3. 21.] | |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br>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br>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br>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등(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의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br>[본조신설 2021. 6. 11.]<br>[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21. 6. 11.>] |
|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처리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指標)를 설정·운영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br>[본조신설 2008. 3. 21.]<br>[제목개정 2017. 11. 28.] | | |
|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 | **제10조(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의 반환)** ①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8.><br>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11. 28.><br>[본조신설 2008. 3. 21.]<br>[제목개정 2017. 11. 28.] | | 부과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br>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br>가.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고 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br>나.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br>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결정의 오류 또는 수납의 착오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br>2.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br>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 반환지급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한다.<br>[전문개정 2023. 4. 19.]<br>**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의 전산처리)**<br>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br>1. 제5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서<br>1의2. 제5조의2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br>2. 제7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br>3. 삭제<2012. 11. 1.><br>4.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자 폐기물부담금 반환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청구서<br>5. 삭제<2016. 1. 21.><br>6. 삭제<2016. 1. 21.><br>7. 삭제<2016. 1. 21.><br>8. 삭제<2016. 1. 21.><br>9. 삭제<2016. 1. 21.><br>[전문개정 2009. 4. 7.] |
|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br>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br>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08. 3. 21.] | | **제25조의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br>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br>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br>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br>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8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09. 4. 7.]<br>[제25조의2에서 이동 <2021. 6. 11.>] |
| **제34조의9** 삭제 | | |
|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제44조의2(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br>2.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수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br>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21. 1. 5.] | | 3. 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br>4.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br>5. 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br>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21. 6. 11.] |
|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 | |
|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08. 3. 21.] | **제46조(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br>1. 재활용의무생산자<br>2. 공제조합<br>3.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지정사업자<br>4. 재활용제품의 생산자<br>5.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 가공처리하는 자<br>6. 그 밖에 폐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br>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명칭<br>2. 사무소의 소재지<br>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br>4. 설립 연월일<br>5. 회원의 수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br>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이나 사업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r>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br>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br>[전문개정 2009. 4. 6.] | |
| **제35조의2** 삭제 | | |
| **제35조의3** 삭제 | | |
|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4. 1. 21., 2015. 1. 20., 2018. 12. 24., 2019. 11. 26., 2020. 6. 9., 2023. 3. 28.><br>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등<br>2.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 **제15조(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9.><br>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br>2. 삭제<2012. 10. 29.><br>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 |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의2. 법 제9조의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중단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의3.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2.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무상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3.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br>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br>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br>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br>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br>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br>8.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br>9. 제25조에 따른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br>10.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br>1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br>12.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자<br>13. 제27조에 따른 조합<br>14.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br>②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에 따른 절차의 준수 여부 및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1. 9.><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1. 9.><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 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 10. 29.><br>[전문개정 2009. 4. 6.]<br>**제29조(회수·재활용 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의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20., 2016. 1. 19.><br>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br>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br>3. 제26조에 따라 제출받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br>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은 제28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 11. 20.><br>[전문개정 2009. 4. 6.]<br>[제목개정 2013. 11. 20.]<br>**제46조의3(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 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3.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4.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5.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자등의 분리배출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5의2.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5의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6.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7.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8.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9.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0.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1의2. 법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1의3. 법 제25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4. 1. 9.><br>⑤ 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1., 2024. 1. 9.><br>⑥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려면 그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 21., 2015. 1. 20., 2024. 1. 9.><br>[전문개정 2008. 3. 21.]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또는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1의4. 법 제25조의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1의5. 법 제25조의1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2의2.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14.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br>[전문개정 2009. 4. 7.]<br>**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해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 21., 2019. 12. 24., 2022. 7. 1.><br>1.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br>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장부<br>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또는 사업장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사본)<br>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만 해당한다)<br>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br>4. 빈용기보증금대상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 관리대장<br>5.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영 제33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br>6.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중 영 제35조제1호 각 목의 자: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br>7.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br>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처리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09. 4. 7.] |
|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 | |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6. 9.><br>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15. 1. 20.] | |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br>1의2.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br>2.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br>3.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br>4. 제14조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br>5. 제1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br>6.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br>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본조신설 2016. 1. 21.] |
|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유통지원센터 및 그로부터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또는 재사용·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6. 9.><br>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br>[본조신설 2015. 1. 20.]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19. 11. 26.><br>1.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br>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②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 11. 26.><br>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br>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br>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3. 28.><br>1. 납세자 인적사항<br>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br>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br>[전문개정 2008. 3. 21.] | **제47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br>2.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br>3.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br>4.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대상자 확인 및 징수를 위한 자료의 제출<br>5. 법 제31조에 따른 자금지원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br>6.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br>7.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 자료의 제출<br>[전문개정 2009. 4. 6.] | |
|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br>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1. 19., 2016. 12. 30., 2022. 5. 3., 2022. 6. 7.><br>1.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br>2.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2. 6.><br>[전문개정 2008. 3. 21.] |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7. 21., 2022. 5. 3.><br>1. 법 제25조의4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br>2. 법 제25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br>3. 법 제25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징수<br>4. 법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br>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br>가. 법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br>나. 법 제41조제2항제15호<br>다. 법 제41조제2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 12. 24.,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2. 11., 2014. 7. 21., 2017. 12. 26., 2019. 7. 2., 2019. 12. 24., 2021. 5. 25., 2021. 6. 8., 2022. 6. 7., 2023. 8. 22., 2024. 3. 19., 2024. 7. 2.><br>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기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준의 준수 여부 확인<br>1의2. 법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중단명령의 준수 여부 확인<br>1의3.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br>1의4.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표시 준수 여부 확인<br>1의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br>1의6.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br>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br>2의2.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br>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br>4.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br>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공개<br>4의3.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br>4의4.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br>4의5.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운영<br>5.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br>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br>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반환<br>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br>9.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br>10.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br>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br>1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정산 및 반환<br>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br>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br>12.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재료·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br>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br>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br>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br>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br>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br>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br>18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 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br>19.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br>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 결과의 통보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신설 2013. 11. 20., 2014. 7. 21.><br>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신설 2016. 1. 19., 2021. 11. 23.><br>[전문개정 2009. 4. 6.]<br>[제목개정 2019. 12. 24.] | |
| **제38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br>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br>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br>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br>[전문개정 2013. 8. 13.] | | |
| **제6장 벌칙** <개정 2008.3.21> | | |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br>2. 제2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br>3.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br>4.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금지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수입·제조 또는 사용한 자<br>[전문개정 2014. 1. 21.] | | |
|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자<br>1의2.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br>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br>3.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br>3의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br>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br>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br>5. 제2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br>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br>[본조신설 2014. 1. 21.]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1. 26.><br>1. 제12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br>2. 제16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2019. 11. 26., 2020. 6. 9., 2023. 3. 28., 2024. 1. 9.><br>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br>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2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br>2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br>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br>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br>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br>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br>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br>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br>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br>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br>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br>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br>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br>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br>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br>16.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48호, 2024. 7. 2., 일부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08호, 2024. 7. 10., 일부개정] |
|---|---|---|
| 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br>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5. 1. 20., 2019. 11. 26., 2024. 1. 9.><br>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br>3. 제36조제5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신설 2014. 1. 21., 2019. 11. 26.><br>[전문개정 2008. 3. 21.] | | |
| **제42조** 삭제 | | |

09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목 차

##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2조(변경등록 · 변경신고 등)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6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유해성심사)
제19조(유해성평가 등)
제19조의2(사용료)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위해성평가)

###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제34조 삭제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 제7장 보칙

제38조(국외제조 ·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운영)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 운영)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 평가 등에 관한 지원)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제45조(자료의 보호)
제45조의2(권리 · 의무의 승계)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제46조(수수료)
제47조(청문)
제48조(권한의 위임 · 위탁)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9조 삭제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2조(벌칙)
제53조(양벌규정)
제54조(과태료)

#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제1장 총칙**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br>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br>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br>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br>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br>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br>5. 삭제<2018. 3. 20.><br>6.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br>**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br>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1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말한다.<br>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br>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br>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br>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br>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br>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br>13.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br>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를 말한다.<br>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br>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br>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br>16. 삭제<2018. 3. 20.><br>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br>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br>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br>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br>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br>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br>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br>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br>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br>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br>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br>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br>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br>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br>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br>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br>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 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 | |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br>③ 국가는 제품 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br>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7.> | | |
|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② 사업자는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교환·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④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7.> | | |
|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1.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br>2.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br>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관련 조사·연구,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br>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br>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br>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br>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br>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br>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br>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br>5. 삭제<2018. 3. 20.><br>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r>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3. 20.><br>1.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br>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 |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삭제<2018. 12. 24.><br>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br>3.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br>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br>**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br>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br>**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br>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체 관계자<br>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br>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3. 20.><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8. 12. 24.><br>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br>1. 회의 일시 및 장소<br>2. 회의 목적과 안건<br>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br>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br>**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 12. 24.><br>1. 위해성평가위원회<br>2. 정보제공심의위원회<br>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br>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8. 12. 24.><br>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br>1. 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br>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br>3.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하는 사람<br>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 | |
| **제8조** 삭제 | | |
| **제9조** 삭제 | | |
|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br>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br>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br>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br>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br>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br>[전문개정 2018. 12. 24.]<br>**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br>가. 1톤 이상 10톤 미만<br>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br>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br>라. 1천톤 이상<br>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가 변경된 경우<br>3. 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2. 7. 29., 2024. 4. 9.><br>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br>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br>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br>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br>4의2.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별표 3의2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br>1. 화학물질의 명칭<br>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br>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br>4. 화학물질의 용도<br>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br>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br>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br>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br>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br>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 |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br>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br>5.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br>6.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br>[본조신설 2018. 12. 24.]<br>**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br>1.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1톤<br>2.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10톤<br>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br>[본조신설 2018. 12. 24.] | 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하 이 호에서 "통제된 조건"이라 한다)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br>5.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br>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br>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br>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br>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이하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br>⑥ 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br>[제목개정 2018. 3. 20.] | | 10.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 2021. 10. 14., 2024. 10. 10.><br>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br>1의2.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br>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br>나.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br>1의3. 영 제13조제1호의4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만,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br>2.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중 유해성에 관한 서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현장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br>2의2.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br>3. 영 제13조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br>3의2.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br>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br>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료(등록신청하려는 자가 다른 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 해당한다)<br>3의3. 영 제13조제6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br>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br>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br>4. 영 제13조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br>5. 영 제13조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br>③ 영 제13조제1호의3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모두에서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신설 2018. 12. 28.>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1. 별표 1에 따른 시험자료<br>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br>**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br>1. 삭제<2018. 12. 28.><br>2. 삭제<2018. 12. 28.><br>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br>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br>**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br>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3.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br>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영 제10조의2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1개월 이내<br>2. 영 제10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br>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분기별 현황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18. 12. 28.]<br>**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4. 9.><br>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4. 9.><br>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고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4. 9.><br>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9.><br>[본조신설 2018. 12. 28.]<br>**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br>1.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br>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br>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br>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인된 경우<br>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br>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br>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9.><br>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br>3.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br>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4. 4. 9.><br>[본조신설 2018. 12. 28.]<br>**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br>**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br>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br>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br>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br>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br>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br>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br>**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br>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br>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신청자료가 다른 경우<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사항 중 신고한 자의 연락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br>④ 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8. 1. 15., 2018. 12. 28.><br>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br>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br>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br>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br>⑥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 15., 2018. 12. 28.><br>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br>⑧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br>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8. 4., 2018. 1. 15., 2018. 12. 28.><br>⑩ 대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8. 12. 28.><br>**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br>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br>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br>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br>**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1. 10. 14., 2024. 4. 9.><br>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 2024. 4. 9.><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1. 10. 14., 2024. 4. 9.><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10. 14., 2024. 4. 9.><br>**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br>**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br>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br>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br>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br>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br>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의 제한 용도<br>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br>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br>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br>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br>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br>1.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br>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br>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br>④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신설 2018. 12. 28., 2021. 10. 14.>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br>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br>3.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판매량<br>4.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br>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br>6.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br>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br>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br>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br>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br>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br>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br>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br>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br><br>**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br>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br>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br>3.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9.><br>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br>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br>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br>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br><br>**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4호의2 및 제6호의2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br>1.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br>2.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br>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br>4. 유독물질 해당 여부<br>4의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br>5.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결과<br>6. 유해성에 관한 결과<br>6의2. 위해성에 관한 결과<br>7.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br>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8. 12. 28.> |
|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br>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br>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br>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개정 2018. 12. 24., 2024. 7. 9.><br>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br>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br>3.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br>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2016. 8. 4., 2018. 12. 28.><br>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br>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br>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br>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18. 10. 16.><br>[제목개정 2018. 3. 20.] |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br>나.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br>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br>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br>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br>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br>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br>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br>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br>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br>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br>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br>7. 비분리중간체<br>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4., 2018. 12. 28.><br>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6. 8. 4., 2018. 12. 28., 2024. 4. 9.><br>④ 등록등면제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8. 12. 28., 2024. 10. 10.><br>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br>2.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등면제확인<br>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br>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 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br>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br>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br>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br>다. 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br>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6., 2018. 12. 24.><br>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br>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br>가. 유해화학물질<br>나. 중점관리물질<br>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 | 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8. 12. 28.><br>⑥ 영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통제된 조건을 말한다.<신설 2018. 12. 28.><br>[제목개정 2018. 12. 28.]<br>**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사항 중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또는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br>2. 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화학물질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변경된 경우<br>3.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br>4.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br>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제7조제1항제1호의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br>3.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br>[제목개정 2018. 12. 24.] | 원본<br>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br>[본조신설 2018. 12. 28.] |
|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br>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br>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1. 등록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br>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br>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br>1. 신고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br>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br>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 |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 2020. 12. 17., 2024. 4. 9.><br>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br>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br>4. 삭제<2018. 12. 28.><br>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6. 삭제<2018. 12. 28.><br>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2020. 12. 17., 2024. 4. 9.><br>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br>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br>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br>1. 삭제<2018. 12. 28.><br>2. 삭제<2018. 12. 28.><br>**제10조(변경등록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란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별표 6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에서 상위의 무게범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br>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br>1.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br>나.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br>2.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br>나. 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br><br>**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8. 12. 28.><br>1.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br>2.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br>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br>[전문개정 2018. 1. 15.]<br>[제목개정 2018. 12. 28.]<br><br>**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br>1.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br>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br>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br>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br>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br>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br>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9.><br>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br>3.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br>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4. 4. 9.><br>[본조신설 2018. 12. 28.]<br>**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1. 10. 14., 2024. 4. 9.><br>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 2024. 4. 9.><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1. 10. 14., 2024. 4. 9.><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10. 14., 2024. 4. 9.><br>**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br>**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br>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br>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보호가 제2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br>④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0. 14.><br>[제목개정 2021. 10. 14.] |
|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4. 13.><br>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br>③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br>1. 삭제<2018. 12. 24.><br>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br>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br>[전문개정 2018. 3. 20.] | | |
|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br>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br>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br>3. 화학물질의 용도<br>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br>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br>6. 화학물질의 유해성<br>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br>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br>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br>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br>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br>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 |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br>1.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br>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고시된 화학물질<br>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자<br>나.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자<br>1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br>1의4.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br>2. 현장분리중간체.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br>2의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 |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2. 7. 29., 2024. 4. 9.><br>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br>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br>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br>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br>4의2.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하 이 호에서 "통제된 조건"이라 한다)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br>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④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신설 2018. 3. 20.><br>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br>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br>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br>2.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br>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 | 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br>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br>4.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br>5.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br>6.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br>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br>7.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br>8.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br>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 | 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br>5.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br>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br>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br>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br>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이하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10.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br>[제목개정 2018. 3. 20.] | | <개정 2015. 10. 30., 2018. 12. 28., 2021. 10. 14., 2024. 10. 10.><br>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br>1의2.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br>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br>나.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br>1의3. 영 제13조제1호의4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만,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br>2.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중 유해성에 관한 서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현장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br>2의2.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br>3. 영 제13조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br>3의2.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br>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br>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료(등록신청하려는 자가 다른 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 해당한다)<br>3의3. 영 제13조제6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br>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br>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br>4. 영 제13조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br>5. 영 제13조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br>③ 영 제13조제1호의3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모두에서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신설 2018. 12. 28.><br>1. 별표 1에 따른 시험자료<br>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br><br>**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br>②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br><br>**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br>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br>2. 외국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진술서<br>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br><br>**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1. 시험자료의 명칭<br>2. 삭제<2018. 1. 15.><br>3.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br>4. 시험의 구체적 방법<br>5. 예상 시험 일정<br>6.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br><br>**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br>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험계획서가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br>1. 시험조건 또는 방법<br>2. 시험자료의 제출기한<br>3. 그 밖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br>③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시험자료의 제출기한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4. 9.><br><br>**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br><br>**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br><br>**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br>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br>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보호가 제2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br>④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0. 14.><br>[제목개정 2021. 10. 14.] |
|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 |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br>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br>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8. 3. 20.><br>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br>[제목개정 2018. 3. 20.]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br>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br>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br>[제목개정 2018. 12. 24.] |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br>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br>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br>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br>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br>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br>**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br>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br>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사항 중 신고한 자의 연락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br>④ 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8. 1. 15., 2018. 12. 28.><br>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br>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br>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br>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br>⑥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 15., 2018. 12. 28.><br>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개정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2018. 1. 15., 2018. 12. 28.><br>⑧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br>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8. 4., 2018. 1. 15., 2018. 12. 28.><br>⑩ 대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8. 12. 28.><br>**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br>② 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br>1.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4.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자료제공 동의서(영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면 신청인과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br>**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이하 "유해성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신설 2018. 12. 28.><br>1. 등록유예기간의 만료일<br>2. 대표자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br>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br>2. 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br>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 2024. 4. 9.><br>1. 국내 제조·수입량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br>3.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br>⑤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8. 12. 28.> |
|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br>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br>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br>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br>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br>**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br>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 등록신청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 |
| **제16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br>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br>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br>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br>4.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br>5. 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br>[본조신설 2018. 12. 24.] | |
|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개 |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 |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정 2018. 3. 20., 2018. 4. 17.><br>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8. 4. 17.><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br>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4. 17.><br>⑤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개정 2018. 4. 17.><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4. 17.><br>[제목개정 2018. 4. 17.] | 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 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br>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br>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br>**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
|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 |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br>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통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br>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br>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br>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br>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br>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8. 3. 20.] |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br>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br>[본조신설 2018. 12. 24.]<br>**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2.><br>⑤ 삭제<2023. 12. 12.><br>⑥ 삭제<2023. 12. 12.><br>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12.><br>[본조신설 2018. 12. 24.] | 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br>②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br>③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br>[본조신설 2018. 12. 28.] |
|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 |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8. 3. 20.] | 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br>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br>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br>[본조신설 2018. 12. 24.] | |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 | |
| **제18조(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②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br>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 | |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이하 “유해성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중 빠른 날부터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신설 2018. 12. 28.><br>1. 등록유예기간의 만료일<br>2. 대표자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br>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br>2. 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br>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 2024. 4. 9.><br>1. 국내 제조·수입량<br>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br>3.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br>⑤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8. 12. 28.><br>**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1.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br>2.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를 검토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된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br>3.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br>4.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정·절차 등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br>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
| **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16.> |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br>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br>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br>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4. 4. 9.><br>1. 국내 제조·수입량 및 수출량<br>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br>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br>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령·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8. 10. 16.><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br>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br>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br>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2018. 10. 16.> |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br>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br>6.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br>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br>8. 나노물질 |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br>**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br>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승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8. 12. 28.><br>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해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br>④ 삭제<2016. 8. 4.><br>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8. 4., 2018. 12. 28.> |
| **제19조의2(사용료)**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br>1.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제27조의2(사용료)**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용도, 사용승인의 신청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br>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br>2.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2.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 대체시험자료인 경우<br>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br>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br>⑤ 제2항·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br>[본조신설 2024. 1. 9.] | | 공공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br>[본조신설 2024. 7. 10.] |
|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
|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br>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br>2.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br>3.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연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br>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7.><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4. 17.> |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br>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br>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br>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br>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br>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 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br>1. 시설 현황 내역서<br>2. 운영 현황 내역서<br>3.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br>2. 시험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br>3. 세부 시험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br>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 서식의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1.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br>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⑤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인력과 연구시설·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br>**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매 2년마다 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br>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내용 및 시험결과의 적정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하여야 한다.<br>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기준, 제3항에 따른 조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시험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br>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br>1.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br>2.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 | |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br>3.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br>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br>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br>④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br>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br>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br>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br>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br>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br>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br>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br>1. 국내 제조·수입량<br>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br>3.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사용형태<br>4.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발생 가능성<br>5. 그 밖에 이용 가능한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련 자료<br>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br>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br>2.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국내외 정보<br>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br>1.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br>2. 위해성평가 기간<br>3.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평가<br>4.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br>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량-반응평가<br>6.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평가<br>7.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도<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선정 등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br><br>**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br>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br>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br>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관한 자료<br>2.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br>3.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br>4.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br>5. 해당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 |
|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 | |
|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br>1. 삭제<2018. 3. 20.><br>2. 삭제<2018. 3. 20.><br>3. 삭제<2018. 3. 20.><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 10. 14.><br>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br>1.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유해성<br>2.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br>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br>1.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자 및 하위사용자의 업체명,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br>2. 제조·수입·사용하는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취급량<br>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관련 정보(해당하는 물질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br>1.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검토 결과(제2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br>2. 삭제<2021. 10. 14.><br>3.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관리대책<br>4.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과 그 도입시기에 관한 정보<br>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br>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 10. 14.><br>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br>2. 허가물질로 지정하는 이유<br>3. 허가유예기간<br>4. 그 밖에 허가물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0. 14.><br>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1. 10. 14.><br>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br>2. 허가면제용도<br>3. 허가유예기간<br>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10. 14.> | |
|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br>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br>2. 신기술의 상용화(常用化)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br>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 | |
|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br>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br>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br>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2021. 10. 14.><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br>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br>2. 제한 또는 금지되는 용도와 내용 | |
|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br>1.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 | |
|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 |
|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br>1. 제10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br>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br>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br>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br>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br>[본조신설 2018. 12. 24.] |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br>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br>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br>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br>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br>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br>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br>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br>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br>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br>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br>1.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br>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br>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br>④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신설 2018. 12. 28., 2021. 10. 14.><br>**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br>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br>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br>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
|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10 | |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br>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br>3.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판매량<br>4.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br>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br>6.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br>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br>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br>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br>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br>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br>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br>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br>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br>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br>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br>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br>3.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9.><br>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br>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br>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br>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 |
|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br><개정 2018.3.20>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br>2. 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br>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br>3.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제목개정 2018. 3. 20., 2020. 5. 26.] | |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br>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br>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br>3.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9.><br>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br>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br>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br>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br>**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3. 12. 18.><br>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br>2. 해당 제품의 사진<br>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br>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br>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함유제품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28.><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8. 12. 28.><br>[제목개정 2023. 12. 18.]<br><br>**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br>1. 해당 제품명<br>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br>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br>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br>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br>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개정 2018. 12. 28.><br>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br><br>**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3. 12. 18.><br>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 |
|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br>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수입하는 경우<br>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br>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br>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br>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br>[본조신설 2023. 1. 3.] | |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br>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br>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신고한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물질별 총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br>2.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br>3.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br>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br>[본조신설 2023. 12. 18.] |
| **제34조** 삭제 | | |
|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br>③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제목개정 2020. 5. 26.] | |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br>1. 해당 제품명<br>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br>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br>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br>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br>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개정 2018. 12. 28.><br>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3. 12. 18.><br>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 |
| **제36조** 삭제 | | |
| **제37조** 삭제 | | |
| **제7장 보칙** | | |
| **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 2018. 10. 16.><br>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br>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br>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br>4. 제32조에 따른 신고 | **제21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br>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br>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br>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br>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br>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br>1. 대한민국 국민<br>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br>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2024. 4. 9.>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br>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br>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br>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br>8. 삭제<2018. 12. 24.><br>9. 삭제<2018. 12. 24.><br>10. 삭제<2018. 12. 24.><br>11. 삭제<2018. 12. 24.><br>**제21조의2(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선임된 사실<br>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br>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br>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br>[본조신설 2018. 12. 24.] |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br>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br>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br>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8. 1. 15., 2024. 4. 9.><br>⑤ 삭제<2018. 12. 28.> |
|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하고 있거나 제조·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br>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br>1. 삭제<2018. 12. 24.><br>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br>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br>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br>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업무<br>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br>7.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br>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br>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br>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br>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br>1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br>**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br>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br>③ 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4., 2019. 12. 24.>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br>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br>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低減)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br>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활동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br>4.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br>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br>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br>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br>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br>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br>4. 화학물질관리협회<br>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위해성 저감 및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조직·예산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br><br>**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br>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br>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br>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br><br>**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br>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한다.<br>1. 전문 분야<br>2. 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br>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br>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br>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
|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br>3.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br>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br>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br>**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4호의2 및 제6호의2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br>1.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br>2.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br>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br>4. 유독물질 해당 여부<br>4의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br>5.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결과<br>6. 유해성에 관한 결과<br>6의2. 위해성에 관한 결과<br>7.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br>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8. 12. 28.> |
|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br>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br>2. 화학물질 등록·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br>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br>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br>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br>6.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br>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br>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 방안<br>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br>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br>3. 삭제<2018. 12. 24.><br>4. 삭제<2018. 12. 24.><br>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br>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br>[본조신설 2016. 8. 2.]<br>**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 4. 2.>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본조신설 2016. 1. 27.] |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br>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br>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br>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br>5.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br>6.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기술적 지원<br>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br>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br>9.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br>10.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4. 4. 2.><br>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br>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3.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br>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br>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br>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br>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br>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br>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br>10.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br>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br>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br>1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br>14.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br>1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br>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br>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3. 12. 12., 2024. 4. 2.><br>1. 삭제<2018. 12. 24.><br>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br>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br>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br>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br>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br>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br>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br>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신설 2016. 8. 2., 2018. 12. 24., 2024. 4. 2.><br>1. 삭제<2018. 12. 24.><br>2. 삭제<2018. 12. 24.><br>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16. 8. 2.,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 2023. 12. 12., 2024. 4. 2., 2024. 7. 9.><br>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br>1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br>1의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제공 및 비용의 징수<br>1의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br>1의5.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br>1의6.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br>1의7.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br>1의8.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br>1의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br>2. 법 제42조의2제1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br>2의2.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br>2의3.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br>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br>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8. 2., 2018. 12. 24., 2021. 10. 14., 2024. 4. 2.><br>1.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br>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br>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에 관한 업무<br>3.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br>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br>5. 삭제<2017. 12. 26.><br>6. 삭제<2018. 12. 24.><br>7. 삭제<2018. 12. 24.><br>8. 삭제<2018. 12. 24.><br>9. 삭제<2017. 12. 26.><br>10. 삭제<2018. 12. 24.><br>[제목개정 2021. 10. 14.] | |
|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 | | **제52조(출입·검사)**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개정 2018. 12. 28.><br>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 2020. 5. 26.><br>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br>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br>3. 삭제<2018. 3. 20.><br>4.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br>5. 삭제<2018. 3. 20.><br>6.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br>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점검계획에 따른 경우<br>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br>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br>4.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신고·변경신고, 등록등면제확인 및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br>5.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br>②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 17., 2018. 12. 28., 2024. 4. 9.><br>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br>2.「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br>2의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br>3.「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br>4.「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br>5.「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br>6.「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br>7.「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8.「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br><br>**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br>1. 국립환경과학원<br>2. 공단<br>3.「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br>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br>5.「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br>6.「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
|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br>1.「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한 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br>2.「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br>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br>[본조신설 2021. 10. 14.] | |
|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 | **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판매·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br>1. 삭제<2018. 3. 20.><br>2.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br>3.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br>4.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br>5. 삭제<2018. 3. 20.><br>6. 삭제<2018. 3. 20.> | | 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3. 12. 18.><br>1. 삭제<2018. 12. 28.><br>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br>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br>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br>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br>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br>6. 삭제<2018. 12. 28.><br>7. 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br>8.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br>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
|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 **제30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br>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 |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4호의2 및 제6호의2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있다.<개정 2018. 3. 20., 2018. 10. 16.><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 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br>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br>2.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br>3.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br>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br>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br>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br>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br>8.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br>2.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br>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br>4. 유독물질 해당 여부<br>4의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br>5.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결과<br>6. 유해성에 관한 결과<br>6의2. 위해성에 관한 결과<br>7.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br>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8. 12. 28.><br>**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br>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보호가 제2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br>④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0. 14.><br>[제목개정 2021. 10. 14.]<br>**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9.><br>②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br>[본조신설 2018. 12. 28.] |
| **제45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신고를 한 자,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 | **제5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br>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한다.<br>[본조신설 2023. 1. 3.] | | 첨부하게 해야 한다.<br>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br>[본조신설 2023. 12. 18.] |
|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br>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br>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br>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br>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br>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br>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br>7.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 | **제56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br>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 **제4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
|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br>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 4. 2.><br>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br>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br>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br>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br>5.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br>6.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기술적 지원<br>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br>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br>9.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br>10.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4. 4. 2.><br>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br>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br>3.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br>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br>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br>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과의 통지<br>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br>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br>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br>10.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br>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br>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br>1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br>14.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br>1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br>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br>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br>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3. 12. 12., 2024. 4. 2.><br>1. 삭제<2018. 12. 24.><br>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br>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br>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br>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br>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br>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br>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br>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신설 2016. 8. 2., 2018. 12. 24., 2024. 4. 2.><br>1. 삭제<2018. 12. 24.><br>2. 삭제<2018. 12. 24.><br>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16. 8. 2.,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 2023. 12. 12., 2024. 4. 2., 2024. 7. 9.><br>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br>1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br>1의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제공 및 비용의 징수<br>1의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br>1의5.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br>1의6.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br>1의7.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br>1의8.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br>1의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br>2. 법 제42조의2제1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br>2의2.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br>2의3.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br>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br>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8. 2., 2018. 12. 24., 2021. 10. 14., 2024. 4. 2.><br>1.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br>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br>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에 관한 업무<br>3.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br>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br>5. 삭제<2017. 12. 26.><br>6. 삭제<2018. 12. 24.><br>7. 삭제<2018. 12. 24.><br>8. 삭제<2018. 12. 24.><br>9. 삭제<2017. 12. 26.><br>10. 삭제<2018. 12. 24.><br>[제목개정 2021. 10. 14.] | |
|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br>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br>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br>3.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br>[본조신설 2016. 1. 27.] | | |
| **제8장 벌칙** | | |
| **제49조** 삭제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br>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br>1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br>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br>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br>3의2.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br>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br>5. 삭제<2018. 3. 20.> | | |
|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br>1. 삭제<2018. 3. 20.><br>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br>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br>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br>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br>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br>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br>2.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br>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br>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 | |
|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br>[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일부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121호, 2024. 10. 10., 일부개정] |
|---|---|---|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3. 1. 3.><br>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br>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br>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br>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br>4의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br>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br>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br>7.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

# 10 화학물질관리법

# 목 차

## 10. 화학물질관리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 운영)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 · 보관량 제한 등)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 등의 중지 등)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 · 수입 등의 중지 등)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 · 수입 · 사용 허가 등)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 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 ·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 · 폐업 등)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권리 · 의무의 승계)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1조 삭제
제41조의2 삭제
제42조 삭제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제46조(조치명령 등)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 · 운영)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제48조의4(국외제조 · 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0조(서류의 기록 · 보존)
제51조(청문)
제52조(자료의 보호)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4조(수수료)
제55조(권한의 위임 · 위탁)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제64조(과태료)

#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제1장 총칙**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br>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br>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 **제2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br>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br>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br>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br>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br>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br>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br>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 | |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8., 2024. 2. 6.><br>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br>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br>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br>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br>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br>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br>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br>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br>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br>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br>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br>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br>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br>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 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재 및 허용물질<br>1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br>③ 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개정 2021. 5. 18., 2024. 2. 6.> | |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br>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 |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br>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br>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br>[본조신설 2016. 7. 6.]<br><br>**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7. 6., 2017. 5. 8., 2018. 11. 27., 2019. 11. 26., 2021. 3. 30.>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br>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분석 기술<br>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br>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분석 기술<br>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기술<br>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20. 3. 31.><br>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br>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br>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br>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br>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br>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br>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 요청 및 수정·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br>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br>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br>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br>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br>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br>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br>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br>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br>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br>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br>6. 삭제<2021. 3. 30.><br>6의2. 삭제<2021. 3. 30.><br>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br>8의2. 삭제<2021. 3. 30.><br>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br>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7. 6., 2017. 12. 26., 2018. 11. 27., 2019. 11. 26., 2020. 9. 29., 2021. 3. 30.><br>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br>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br>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br>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확인 등<br>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br>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br>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br>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br>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br>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등<br>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중지 명령<br>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br>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br>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br>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br>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br>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br>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br>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br>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br>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br>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br>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br>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br>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br>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br>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br>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br>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17. 5. 8.><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7. 6., 2017. 5. 8.><br>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br>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br>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br>[제목개정 2020. 9. 29.] | |
|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br>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 |
|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br>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br>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br>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br>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br>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br>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br>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br>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br>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br>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 |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br>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br>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br>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br>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br>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br>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br>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br>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br>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br>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br>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br>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5. 8., 2017. 7. 26., 2018. 11. 27., 2020. 9. 29.><br>1.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br>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br>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br>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br>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br>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br>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br>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br>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br>1. 정기회의: 연 1회<br>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br>**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 11. 27.><br>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br>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br>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br>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br>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br>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br>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br>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br>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br>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br>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br>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br>[본조신설 2016. 5. 29.] | | |
|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br>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에 관한 계획<br>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br>4.「교통안전법」 제28조,「선박안전법」 제41조 및「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 |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br>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br>3. 유독물질<br>4. 허가물질<br>5. 제한물질<br>6. 금지물질<br>7. 사고대비물질<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br>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br>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br>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br>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br>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br>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br>**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br>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17.><br>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br>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br>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br>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br>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br>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br>4. 삭제<2017. 5. 30.><br>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br>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br>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br>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br>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br>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br>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1. 유해화학물질<br>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br>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br>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br>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br>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br>3. 조사방법·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br>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br>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br>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br>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br>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br>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br>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 | |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br>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br>⑤ 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br>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br>⑦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장을 말한다.<br>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br>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br>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br>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br>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br>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br>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br>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br>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7. 11. 28.] | | 서 수정·보완 요청서에 수정·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9. 11. 29.]<br>**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br>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br>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br>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br>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br>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br>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br>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br>2.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br>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br>[본조신설 2019. 11. 29.] |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 |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br>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br>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br>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28.><br>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1. 28.><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11. 28.><br>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br>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br>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개정 2021. 4. 1.><br>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br>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4. 1.><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9. 11. 29.]<br><br>**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18. 11. 29.><br>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br>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br>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br>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 11. 28.><br>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 | 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br>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br>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18. 11. 29.><br>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9.><br>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br>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 2018. 11. 29.> |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 |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br>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br>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br>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br>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br>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br>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br>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br>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br>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br>[전문개정 2021. 9. 30.] |
|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7.><br>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br>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br>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br>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br>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 |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br>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br>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br>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br>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br>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br>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br>1. 유독물질: 500킬로그램<br>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br>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br>**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br>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br>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0. 9. 29.><br>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br>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br>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br>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br>4.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br>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 |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7., 2022. 1. 10.><br>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br>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br>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br>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br>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 번호<br>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br>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br>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br>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 |
| **제17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br>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 |
|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br>④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6. 12.><br>[제목개정 2018. 6. 12.] | |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사용·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br>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0. 9. 29., 2023. 10. 4.><br>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br>가.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br>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br>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br>라.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용도<br>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br>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br>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br>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br>1. 제조·수입·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br>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br>3. 화학물질의 용도<br>4. 화학물질의 위해성<br>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br>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5. 26.><br>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br>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말한다. |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br>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br>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br>4. 대체 계획 자료 1부<br>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과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br>4.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br>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br>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br>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br>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br>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br>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br>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br>⑦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 | |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른 허가를 받은 경우<br>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br>⑧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5. 26.><br>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면제한다.<br>1.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br>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br>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br>[전문개정 2022. 11. 15.] | **제16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br>가.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br>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br>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br>라. 허가받은 제한물질의 용도<br>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br>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br>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br>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br>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제17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br>1.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br>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br>3. 신고한 유독물질의 용도<br>4.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br>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br>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
|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5. 26.><br>②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br>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br>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br>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br>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br>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br>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br>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br>3. 수출자 책임보증서<br>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br>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br>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3.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br>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br>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 |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br>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br>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br>3. 부탄가스<br>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 | |
|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10.><br>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br>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br>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br>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br>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br>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br>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br>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br>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br>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br>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br>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br>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br>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 |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br>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br>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br>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br>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br>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br>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br>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br>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8.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br>9. 「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위한 조치계획<br>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br>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br>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br>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br>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br>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br>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br>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br>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br>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br>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br>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br>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br>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br>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br>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 시기·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20. 3. 31.] | |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br>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br>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br>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br>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br>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br>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전문개정 2021. 4. 1.]<br>**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br>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br>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br>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br>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br>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목적·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br>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br>⑥ 제5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br>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br>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br>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대피에 관한 사항<br>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21. 4. 1.] |
|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br>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20. 3. 31.] | |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서면점검: 1년 주기<br>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년 주기<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br>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br>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br>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br>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방법·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21. 4. 1.] |
|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br>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br>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br>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br>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br>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br>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br>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 |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br>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br>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br>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br>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br>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br>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br>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br>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20. 3. 31.] | | [본조신설 2021. 4. 1.] |
|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br>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br>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br>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전문개정 2020. 3. 31.] | |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br>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br>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br>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br>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br>[전문개정 2021. 4. 1.] |
|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br>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 10.>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br>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신설 2020. 3. 31.><br>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br>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br>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0. 5. 26.><br>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br>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br>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br>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br>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br>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br>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br>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br>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br>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br>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br>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8.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br>9. 「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31.><br>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31.> | | 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br>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br>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br>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br>1.「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br>2.「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br>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br>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br>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br>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야 한다.<br>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br>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br>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br>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br>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br>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br>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br>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전문개정 2021. 4. 1.]<br>**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br>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br>**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br>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br>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br>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br>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br>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17. 5. 30.]<br><br>**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br>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br>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br>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br>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br>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따른 검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br>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 | |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br>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4. 1.><br>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br>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br>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br>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0. 9. 29.><br>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br>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br>**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br>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0. 9. 29., 2021. 4. 1.><br>1.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br>2.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br>3.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토결과서를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받은 날부터 매 12년<br>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br>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br>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br>2. 이행계획 및 공사비<br>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br>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br>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br>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6.><br>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br>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br>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1. 4. 1., 2022. 1. 10.><br>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br>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br>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br>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br>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br>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br>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br>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br>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br>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br>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0. 9. 29., 2021. 4. 1.><br>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br>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br>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br>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br>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br>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4. 1.><br>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br>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br>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br>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br>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22. 1. 10.><br>1.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br>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br>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br>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r>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개정 2021. 4. 1., 2022. 1. 10.><br>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4. 7., 2021. 4. 1., 2022. 1. 10.> |
|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br>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br>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 |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br>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br>2. 이행계획 및 공사비<br>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br>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br>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br>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6.><br>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br>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 |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br>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br>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br>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br>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br>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br>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br>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br>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br>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br>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br>6.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 |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 | |
|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br>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br>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br>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7. 5. 30.><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1. 4. 1.><br>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br>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 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신설 2016. 4. 7., 2017. 5. 30.><br>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br>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6. 4. 7., 2017. 5. 30.><br>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22. 1. 10.><br>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br>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br>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br>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4. 7.> |
|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20. 3. 31., 2021. 5. 18.><br>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br>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br>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 --- |
|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br>3. 삭제<2020. 3. 31.><br>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5. 18.><br>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br>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1.><br>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3. 31.><br>⑧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 |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4. 1.><br>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br>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br>⑤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br>⑥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br>⑦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br>⑧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0. 9. 29.><br>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br>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 |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br>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br>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br>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br>4.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br>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br>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br>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br>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br>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정 2022. 1. 10.><br>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br>2. 사업자등록증<br>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br>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r>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br>④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br>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4. 1.><br>**제28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br>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br>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br>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br>**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1. 4. 1., 2022. 1. 10.><br>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br>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br>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br>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br>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br>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br>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br>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br>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0. 9. 29., 2021. 4. 1.><br>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br>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br>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br>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br>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br>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4. 1.><br>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br>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br>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br>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br>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22. 1. 10.><br>1. 제1항제1호마목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br>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br>가.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br>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br>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br>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개정 2021. 4. 1., 2022. 1. 10.><br>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4. 7., 2021. 4. 1., 2022. 1. 10.><br>**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허가일·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 9. 29.><br>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
|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br>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br>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br>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6. 12. 27.] | |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br>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br>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br>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br>[본조신설 2017. 12. 27.]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br>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br>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br>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br>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br>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br>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br>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br>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br>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br>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br>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br>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br><br>**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br>1.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br>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br>[본조신설 2017. 12. 27.] |
|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br>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br>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br>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6. 12. 27.] | | **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br>1.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br>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br>[본조신설 2017. 12. 27.]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6. 12. 27.] | |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1. 29.><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19. 11. 29.><br>[본조신설 2017. 12. 27.]<br><br>**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br>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수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br>②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1. 29.><br>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19. 11. 29.><br>[본조신설 2017. 12. 27.] |
|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br>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br>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br>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br>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 | |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3. 31.><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1.><br>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31., 2020. 5. 26.><br>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br>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3. 31.> | | 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0. 9. 29.><br>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br>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br>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br>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br>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0. 9. 29.><br>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br>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br>3. 도급기간<br>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9. 29.><br>1. 변경된 도급계획서<br>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br>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0. 9. 29.><br>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br>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br>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br>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br>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9. 29.><br>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br>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br>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br>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br>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
|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br>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br>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br>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10. 4.><br>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br>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br>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br>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br>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br>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br>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br>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람<br>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정밀화학기사·화약류제조기사·환경위해관리기사·화학분석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br>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br>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위험물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br>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br>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br>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br>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br>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3. 30.><br>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수 있다.<br>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br>1)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br>2)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br>3)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br>4)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br>5)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br>**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br>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br>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③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br>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br>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br>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br>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br>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br>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br>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br>9. 삭제<2021. 3. 30.><br>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br>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br>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br>**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7. 5. 30.><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1. 4. 1.><br>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신설 2016. 4. 7., 2017. 5. 30.><br>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br>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6. 4. 7., 2017. 5. 30.><br>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4. 7., 2022. 1. 10.><br>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br>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br>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br>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4. 7.> |
|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br>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br>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r>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br>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br>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br>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20. 9. 29.><br>1. 화학물질안전원<br>2. 삭제<2022. 1. 10.><br>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br>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또는 환경·화학·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br>나. 동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br>다.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br>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 10.><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1. 10.><br>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br>**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7. 5. 30.><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1. 4. 1.><br>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신설 2016. 4. 7., 2017. 5. 30.><br>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br>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6. 4. 7., 2017. 5. 30.><br>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22. 1. 10.><br>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br>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br>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br>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4. 7.> |
|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br>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br>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 **제13조의2(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br>[본조신설 2021. 11. 19.] |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br>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br>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br>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br>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br>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 5. 18.> | |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br>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br>**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br>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br>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br>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7.><br>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br>2.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br>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7.> |
|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1. 5. 18.><br>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br>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br>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br>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br>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br>5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br>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br>7.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 |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6. 7. 27.><br>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br>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br>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br>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br>12.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br>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6. 1. 27.] | | |
|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br>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br>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br>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br>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br>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1. 28., 2020. 3. 31., 2021. 5. 18.><br>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br>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br>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br>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br>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br>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br>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br>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br>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br>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br>10.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적합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br>11.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br>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br>13.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br>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br>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br>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br>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br>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br>1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br>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br>21. 삭제<2020. 3. 31.><br>22. 삭제<2020. 3. 31.><br>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br>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br>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br>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3. 31.><br>1. 납세자의 인적사항<br>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br>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br>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br>**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br>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br>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징수한다.<개정 2020. 3. 31.><br>⑤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20. 3. 31.> | | |
|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2016. 12. 27.><br>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br>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br>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br>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br>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 | |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br>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 1. 10.><br>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br>2. 사업자등록증<br>3.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br>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br>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공동활용계획서<br>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br>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br>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br>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br>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br><br>**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br>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br>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br>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
|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 |
|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 | |
|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br>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br>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br>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br>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제41조** 삭제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제41조의2** 삭제 | | |
| **제42조** 삭제 | | |
|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 | |
|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 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br>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 |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br>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br>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br>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 |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br>**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br>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br>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br>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2019. 11. 29.><br>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br>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br>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br>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7. 12. 27.] |
|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br>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6. 12. 27.] | |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9.><br>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br>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사실이 확인된 경우<br>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br>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7. 12. 27.]<br>**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br>② 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br>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br>[본조신설 2017. 12. 27.] |
|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 |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br>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 사항<br>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위해성<br>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br>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br>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br>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br>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br>② 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br>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br>④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br>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제46조(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br>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br>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br>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 |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있다.<개정 2020. 5. 26.><br>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개정 2017. 1. 17.><br>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br>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 **제6장 보칙** | | |
|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8. 12. 24.><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 |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8. 12. 24.><br>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br>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br>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br>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br>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br>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br>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br>[본조신설 2021. 4. 1.]<br>**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br>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br>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br>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br>5. 화학물질의 용도·위험성·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br>6.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br>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br>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br>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br>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br>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br>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 | |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br>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br>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br>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br>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 --- |
| 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br>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21. 8. 17.]<br>[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3으로 이동 <2021. 8. 17.>] | |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br>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br>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허가 등에 관한 업무<br>8.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업무<br>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br>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검토 및 위험도·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br>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br>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br>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br>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br>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br>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br>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br>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br>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br>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br>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br>[본조신설 2022. 1. 10.]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3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br>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br>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br>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br>[본조신설 2021. 11. 19.] | |
|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br>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br>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br>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br>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br>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br>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 | |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4. 7., 2017. 12. 27., 2021. 4. 1.><br>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br>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br>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br>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br>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br>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br>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br>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br>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br>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br>9.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br>9의2. 삭제<2020. 3. 31.><br>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br>11. 제5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br>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br>②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br>③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4. 1.><br>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 4. 1.><br>**제54조(출입·검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개정 2017. 5. 30., 2018. 11. 29., 2021. 4. 1.><br>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br>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br>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br>4.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br>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br>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 5의3. 삭제<2021. 4. 1.><br>5의4. 삭제<2021. 4. 1.><br>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br>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br>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br>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br>10. 삭제<2021. 4. 1.><br>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br>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br>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br>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br><br>**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br>1. 국립환경과학원<br>2. 화학물질안전원<br>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br>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br>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br>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br>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br>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br>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은 자<br>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br>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br>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br>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br>7.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br>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 |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br>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br>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br>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5. 30., 2019. 4. 17.> |
| **제5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br>1. 삭제<2020. 3. 31.><br>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br>[전문개정 2016. 1. 27.] | | |
|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br>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br>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br>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br>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br>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br>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br>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br>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br>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br>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br>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br>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br>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br>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br>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br>③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19. 11. 29.><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br>**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br>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br>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 |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br>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br>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br>⑤ 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br>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br>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br>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br>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br>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
|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br>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br>2.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br>3.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br>4.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br>5.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br>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유독물질의 수입변경신고<br>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br>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br>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br>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br>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br>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및 변경신고<br>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 | |
|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br>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 |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7. 6., 2017. 5. 8., 2018. 11. 27., 2019. 11. 26., 2021. 3. 30.><br>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br>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br>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br>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br>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 요청 및 수정·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br>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br>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br>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br>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br>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br>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br>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br>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4.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br>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br>6. 삭제<2021. 3. 30.><br>6의2. 삭제<2021. 3. 30.><br>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br>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br>8의2. 삭제<2021. 3. 30.><br>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br>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br>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7. 6., 2017. 12. 26., 2018. 11. 27., 2019. 11. 26., 2020. 9. 29., 2021. 3. 30.><br>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br>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br>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br>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확인 등<br>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br>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br>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br>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br>9.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관리 등<br>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br>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br>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br>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br>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br>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br>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br>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br>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br>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br>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br>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br>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br>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br>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br>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 령 및 출입·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br>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br>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br>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협회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br>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17. 5. 8.><br>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7. 6., 2017. 5. 8.><br>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br>2.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br>3.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협회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br>[제목개정 2020. 9. 29.] | |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 **제7장 벌칙** | | |
|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br>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br>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br>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br>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br>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br>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br>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br>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br>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br>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br>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지 아니한 자<br>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br>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br>5.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br>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br>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br>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br>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br>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br>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br>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 | |
|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br>2.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br>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br>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br>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br>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br>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br>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
|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br>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br>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 | |
|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br>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br>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br>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br>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br>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br>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 |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br>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br>4의2. 삭제<2020. 3. 31.><br>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br>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br>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br>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br>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br>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br>2. 삭제<2020. 3. 31.><br>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br>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br>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 | | |

| 화학물질관리법<br>[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br>[환경부령 제1084호, 2024. 4. 9., 일부개정] |
|---|---|---|
| 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br>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